

방송통신정책연구

10-진흥-라-13

#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법제도 연구

(A Legal Study on Internet Business)

2010. 12. 31.

연구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방송통신정책연구

10-진흥-라-13

#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법제도 연구

(A Legal Study on Internet Business)

2010. 12. 31.

연구 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총괄책임자 : 이규정(한국정보화진흥원)

##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법제도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12. 31

연구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총괄책임자 : 이규정 연구위원(한국정보화진흥원)

참여연구원 : 차재필 선임(한국정보화진흥원)

주윤경 주임(한국정보화진흥원)

# 요 약 문

## 1. 제목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법제도 연구

## 2.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는 초기 정보제공·전자상거래 위주에서 쌍방향·맞춤형·융복합의 다양한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향후 모바일 인터넷광고, 전자결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인터넷기반의 응용서비스가 IT 산업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아울러 무선 인터넷의 보편화와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로 점차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터넷의 역할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터넷이 최근 10년간 OECD 회원국의 GDP 성장의 17.9%를 차지하며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고, 국내 인터넷산업의 규모가 2009년 29조 7,230억원으로 2002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 증대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오늘날 국가경제에 있어서 인터넷의 역할이 점점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인터넷의 활용 및 신규서비스 확산, 인터넷기반서비스 시장의 경쟁 및 상생협력기반 조성 등에 있어서 취약한 상황이다. 2009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인터넷기반서비스 등 IT 서비스의 수출 비중이 OECD 28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며, 전체 산업에서 인터넷을 비롯한 IT의 활용도는 10% 이하로 저조하고, 소수 대기업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대·중소 인터넷기업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IT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즉, 인터넷기반의 다양한 응용서비스의 발전기반 구축, 새롭게 등장하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시장진입 촉진 및 경쟁환경 조성, 다양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공정한 제공·이용환경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종합적인 시책과 법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법적 환경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양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창출과 시장진입 촉진, 유효한 경쟁환경 조성, 공정한 서비스 제공·이용환경 구축 등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그 결과로서 사물지능통신, 클라우드컴퓨팅 등 신규 인터넷기

반서비스들에 대한 이슈 연구, 망중립성 등에 대한 법률적 이슈 등을 분석하고, 최종적인 결과물로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입법방안을 도출하였다.

###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이 연구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을 위해서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업자 면책의 기준, 자율규제의 활성화, 사물정보통신·클라우드컴퓨팅 등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인터넷기반서비스에 관한 법적 이슈를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칭)「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법안」과 시행령안 등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현행 법령의 규제일관성 유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하여 인터넷 이용 관련 개별법령 정비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현행 인터넷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인터넷기반서비스와 관련된 법제도적 이슈 검토와 신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트렌드 분석 및 법적·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법제도연구 협력 네트워크로서 「인터넷 법·제도 포럼」을 운영하였다.

### 4. 연구내용 및 결과

이 연구의 주요 내용과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 o 연구보고서(7권)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이슈 연구
- 2010년 인터넷 법제도 포럼 운영결과 보고서
- 온라인콘텐츠산업의 현황과 그 법적 이슈
- 사물지능통신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 소셜 미디어의 확산과 법제도적 시사점
- 해외 주요 인터넷기업의 M&A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o 이슈페이퍼(3권)

- 스마트폰 활성화를 위한 3대 핵심이슈 및 정책방향
- 인터넷서비스의 규제형평성 확보방안

- 모바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망중립성의 5대과제
- o 자료집(1권)
  - 신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법적 쟁점과 과제 학술행사 자료집
- o 정책제안 및 반영(1건/1건)
  -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개선 방안(제안 및 반영)
- o 논문 및 학술발표(1건)
  -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및 시사점"(2010 NIA-인터넷 법학회 추계학술 대회)
- o 대외협력(2건)
  - 전문가그룹 운영
  - 인터넷서비스 법·제도 포럼 운영

## 5. 정책적 활용내용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입법방안과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다양한 법제 동향 및 이슈분석 자료는 우리나라 인터넷 관련 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와 지원을 통한 시장활성화, 일반적인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통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 서비스 활성화 촉진에 초점을 두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법제정비 및 정책수행에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6. 기대효과

이 연구는 정보통신분야 뿐만 아니라 전체산업 영역에 걸쳐 인터넷기반서비스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환경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기반서비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며, 서비스 제공·이용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여 인터넷기반서비스 산업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입법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SUMMARY

## 1. Title

A Legal Study on Internet Business

##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Since 1990s, as internet is commercially launched, there are dramatic changes were occurred in terms of socially and economically. In Korea, thanks to highly developed fast broadband internet network infrastructure, many innovative and experimental services have been tried for last 20 years such as search engines, chatting community, SNS, online game, collective web portals and so on. These kinds of 「internet based services」 have experienced many 'up' and 'down' on the roller coaster of internet economy, now this industry is, again, in the phase of 'stuck' which could be said, in other words, 'low level of competition', 'no innovation' and 'no more growing'. Therefore, it is time to introduce more systematic approach to stimulate this industry again to achieve more balanced developing.

Also as rising of internet based services, there are many side effects such as 'defamation', 'phishing'. Those side effect are lowering the reliability of services and the number of users. Thus,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sound market and user environment. Furthermore, there are many laws related each different internet based services are also barriers for development of internet economy. Therefore, it is need to have newly developed legal framework for internet business.

##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study has been focused on providing Law reform of internet related laws for industry development by promoting Internet Based Service. For this, it has been analysed and studied that Internet Based Service related law issues such as the

standards for exemption of ISP, promote self-regulation, IoT(M2M), Cloud computing service and etc. and the draft of 'Act on Internet Based Service Development' and presidential decree. To keep consistent and reasonable regulations, the study for reforming the other laws which are related with usage of Internet services, the issues are drawn out as a result of it. In addition to this, 'Internet Law and Policy Forum' has been run by NIA for networking. it was another pillar of this study which is academia network who are working on Internet law and industry network who involved in internet based services.

#### **4. Research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below.

##### **o Study reports(7)**

- A Study on the Internet Based Services Legislation
- A study for promotion of Internet usage
- A final report for Internet Law and Policy Forum in 2010.
- The current issues and legal issues of Online Contents Industry
- The legal issues of IoT(M2M)
- The expansion of Social-Media and legal implications
- The Policy implications of foreign main Internet firms M&A

##### **o Issue papers(3)**

- 3 main tasks for promoting Smart phone
- Reserving Fare regulation in Internet Service market
- 5 tasks of Net Neutrality for Mobile Internet Promotion

##### **o Information booklet(1)**

- Seminar booklet ; Legal issues and tasks of new Internet Based Services

##### **o Policy suggestion and its result(1/1)**

- Draft of Reform of Internet Based Services Laws

- o Thesis and Academic address(1)
  - Legal issues for promoting IoT
- o Networking
  - Expert study group for Internet Law
  - Internet Service Law and Policy Forum

##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is study focused on increasing legal predictability and promotion of Internet services by minimising the regulation, increasing government support and setting general consumer protection plan.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expected to be used by the government officers in KCC(Korean Communication Committee) who are in developing legal framework and policy for developing national internet business.

## **6. Expectations**

This study is aimed to provide legal environment which needed for Internet Based Services should be grow up as a new developing engine, not only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rea but also all the industrie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e study is expected that it will help to establish legal policy which will support to grow up the Internet Based Service Industry in quality wise by increasing legal predictability, giving more responsibility and freedom of ISPs, securing reliability of Internet services.

# 목 차

## 제 1 장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                                                 |    |
|-------------------------------------------------|----|
| 제 1 절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             | 1  |
| 1. 인터넷 비즈니스의 발전과 전망 .....                       | 1  |
| 2.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국내외 법제도 동향 .....                 | 5  |
| 3.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과 현행법제의 한계 ..... | 12 |
| 4. (가칭)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            | 15 |
| 제 2 절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입법방안 .....               | 23 |
| 1. 입법목적·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28 |
| 2.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기반 조성 .....                      | 28 |
| 3. 인터넷기반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신뢰성 보호 .....                | 38 |
| 4. 인터넷광고 .....                                  | 46 |
| 5. 사물정보통신서비스 .....                              | 53 |
| 6.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 .....                         | 67 |
| 7. 정보통신 통합과금 서비스 .....                          | 76 |
| 8. 자율규제 .....                                   | 78 |
| 9. 분쟁의 조정 및 고충의 처리 .....                        | 85 |
| 10. 인터넷기반서비스 사업 .....                           | 89 |

## 제 2 장 인터넷비즈니스 관련 법제도 개선과제 및 동향분석

|                                               |     |
|-----------------------------------------------|-----|
| 제 1 절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발굴 .....            | 99  |
| 1. 개선과제 발굴의 필요성 .....                         | 99  |
| 2. 현행 법제도 검토 및 대안 .....                       | 100 |
| 3. 시장 및 사업자 규제개선 방안 .....                     | 100 |
| 제 2 절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인터넷서비스 규제형평성 확보 방안 ..... | 101 |
| 1. 국경 없는 비즈니스 시대의 도래 .....                    | 101 |

|                                              |     |
|----------------------------------------------|-----|
| 2. 인터넷 규제형평성 관련 4대 이슈 분석 .....               | 102 |
| 3. 인터넷서비스 규제형평성 확보 방안 .....                  | 104 |
| 제 3 절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법제도적 시사점 .....              | 104 |
| 1. 소셜 미디어 확산 현황과 문제점 .....                   | 104 |
| 2. 소셜 미디어의 개념 및 유형 .....                     | 105 |
| 3. 소셜 미디어의 특징 .....                          | 105 |
| 4. 시사점 .....                                 | 108 |
| 제 4 절 모바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망중립성과 과제 .....          | 108 |
| 1. 망 중립성 원칙의 정의 및 필요성 .....                  | 108 |
| 2. 해외 망 중립성의 논의 현황 .....                     | 110 |
| 3. 해외 현황과 시사점 .....                          | 111 |
| 4. 모바일인터넷 망 중립성의 5대과제와 기대효과 .....            | 113 |
| 제 5 절 스마트폰 활성화를 위한 핵심이슈 및 정책방향 .....         | 113 |
| 1.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 .....                         | 113 |
| 2. 스마트폰 관련 3대 핵심이슈 진단 .....                  | 114 |
| 3. 스마트폰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 116 |
| 제 6 절 해외 주요 인터넷기업의 M&A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 117 |
| 1. 인터넷 시장 현황 .....                           | 117 |
| 2. 주요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 현황 .....                  | 118 |
| 3. 정책적 시사점 .....                             | 118 |
| 4. 기대효과 .....                                | 118 |
| 제 7 절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및 시사점 ..... | 119 |
| 1. 사물지능통신의 현황 .....                          | 119 |
| 2. 사물지능통신의 정의 .....                          | 120 |
| 3. 해외 사물지능통신 시장현황 .....                      | 120 |
| 4. 국내 사물지능통신 기반구축 및 추진사업의 현황 .....           | 122 |
| 5. 법제도적 쟁점 및 시사점 .....                       | 124 |

|                                 |     |
|---------------------------------|-----|
| 제 8 절 온라인콘텐츠산업의 현황과 법적 이슈 ..... | 125 |
| 1. 온라인콘텐츠 관련 법제도 현황 .....       | 125 |
| 2. 개별 법률적 쟁점 .....              | 126 |
| 3. 대안 제시 .....                  | 126 |
| 4.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한 의의 .....        | 126 |

### 제 3 장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연구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협력

|                                  |     |
|----------------------------------|-----|
| 제 1 절 인터넷 법·제도 포럼 운영 .....       | 127 |
| 1. 운영목표 및 주요 논의내용 .....          | 127 |
| 2. 포럼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127 |
| 3. 「인터넷 법·제도 포럼」 운영실적 .....      | 128 |
| 제 2 절 NIA-인터넷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 129 |
| 1. 개요 .....                      | 129 |
| 2. 세부내용 .....                    | 130 |

# Contents

## **Chapter 1. Internet based services legal study**

|                                                                           |    |
|---------------------------------------------------------------------------|----|
| Section 1. The needs for legislation of Internet Based Service Law .....  | 1  |
| Section 2. The legislation for Developing of Internet Based Service ..... | 23 |

## **Chapter 2. Legal reform study for Internet business related laws**

|                                                                          |     |
|--------------------------------------------------------------------------|-----|
| Section 1. Legal Reform for Promotion of Internet usage .....            | 99  |
| Section 2. Fare regulation in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   | 101 |
| Section 3. Legal issues related with Social Media .....                  | 104 |
| Section 4. Net neutrality .....                                          | 108 |
| Section 5. The way to promote Smart Phone .....                          | 113 |
| Section 6. M&A of Internet Firms .....                                   | 117 |
| Section 7. The legal issues on Internet of Things .....                  | 119 |
| Section 8. The status of internet contents industry and its issues ..... | 125 |

## **Chapter 3. Cooperations on Internet based services Legal Study**

|                                                              |     |
|--------------------------------------------------------------|-----|
| Section 1. Internet Law and policy Forum .....               | 127 |
| Section 2. Internet based services legal study seminar ..... | 129 |

## <표목차>

|                                             |    |
|---------------------------------------------|----|
| <표 1-1>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액 .....                  | 2  |
| <표 1-2> IT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                 | 3  |
| <표 1-3> 국내외 SNS 방문자수, 페이지뷰 1년간 추이 비교 .....  | 4  |
| <표 1-4> 포털의 서비스별 시장점유율 .....                | 5  |
| <표 1-5>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주요 법률 .....             | 6  |
| <표 1-6>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현황 .....                  | 13 |
| <표 1-7> 세무 입법필요성과 규정 내용 .....               | 17 |
| <표 2-1> 기능 중심의 인터넷기반서비스 분류 .....            | 24 |
| <표 2-2> 인터넷산업 분류체계 .....                    | 26 |
| <표 2-3> 인터넷기반서비스 시장진입 규제방식과 해당 사업자 .....    | 90 |
| <표 2-4>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 | 90 |

## <그림목차>

|                                             |    |
|---------------------------------------------|----|
| <그림 1-1> 세계 인터넷 이용자수 추이 .....               | 1  |
| <그림 1-2>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 과정 .....              | 1  |
| <그림 1-3> 정보입수경로 .....                       | 2  |
| <그림 1-4> 인터넷 서비스 이용율 변화 추이 .....            | 2  |
| <그림 1-5> 독일의 방송정보통신법 체계 .....               | 10 |
| <그림 1-6> 인터넷기반서비스-정보통신서비스-부가통신역무간 관계도 ..... | 13 |
| <그림 1-7> (가칭)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법(안) 구성도 .....      | 16 |

# 제1장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 제1절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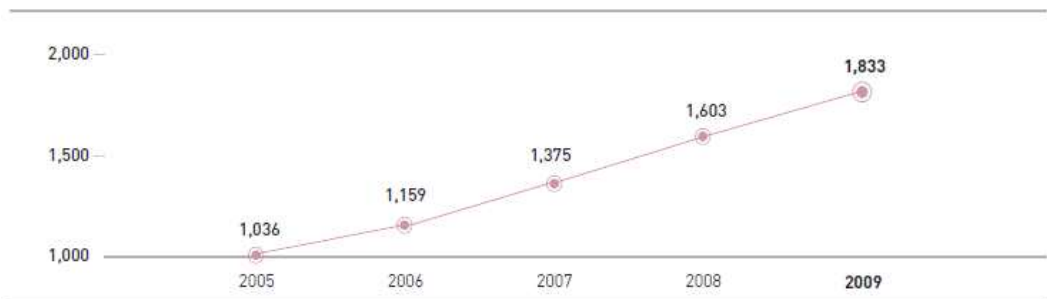
### 1. 인터넷 비즈니스의 발전과 전망

가. 인터넷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영향력 증대

-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수는 2007년 13억 9,400만명(이용률 20.9%), 2008년 15억 8,742만명(이용률 23.4%), 2009년 18억 3,30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1-1> 세계 인터넷 이용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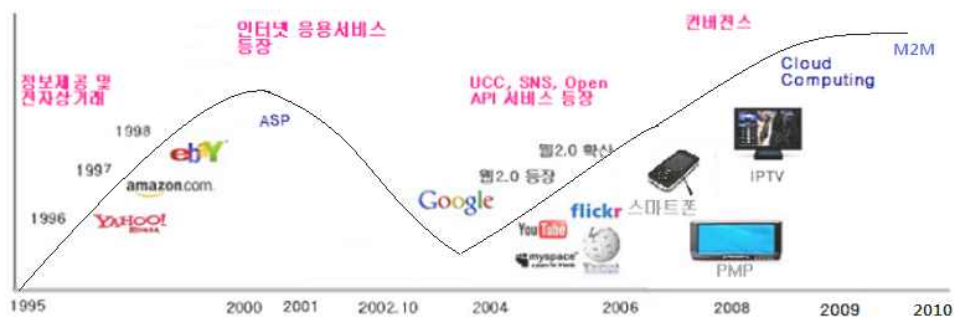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명)



[ITU, 2010.6]

-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는 초기 정보제공·전자상거래 위주에서 쌍방향·맞춤형·융복합의 다양한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음.

<그림 1-2>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 과정



## 나. 인터넷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증대

-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매우 중요하고 대중적인 매체로 자리 잡음.
- 참여·공유·개방의 개념에 기반한 UCC, 블로그, SNS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보급으로 이용자 주도의 인터넷 이용문화가 확산됨.

<그림 1-3> 정보입수경로



<그림 1-4>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 변화 추이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09.11]

- 과거 인터넷은 주로 의사소통수단으로 간주되었으나 점차 기존 사업분야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자리 잡음.
- 인터넷은 최근 10년간 OECD 회원국의 GDP 성장의 17.9%를 차지하며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음(OECD 장관회의, 2008).

<표 1-1>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액

(단위: 십억원, %)

| 구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sup>p</sup> | CAGR | 전년대비 증감률 |
|------|-----------------|------------------|------------------|------------------|------------------|------------------|------------------|-------------------|------|----------|
| 기반산업 | 1,516<br>(9.9)  | 1,147<br>(7.1)   | 934<br>(5.1)     | 1,292<br>(6.0)   | 1,346<br>(5.6)   | 1,499<br>(5.5)   | 1,547<br>(5.2)   | 1,557<br>(5.2)    | 0.4  | 0.6      |
| 지원산업 | 4,235<br>(27.7) | 4,204<br>(26.0)  | 4,929<br>(27.0)  | 5,243<br>(24.3)  | 5,835<br>(24.3)  | 6,486<br>(24.0)  | 7,852<br>(26.4)  | 8,049<br>(27.1)   | 9.6  | 2.5      |
| 활용산업 | 9,513<br>(62.3) | 10,848<br>(67.0) | 12,408<br>(67.9) | 15,083<br>(69.8) | 16,818<br>(70.1) | 19,028<br>(70.4) | 20,304<br>(68.4) | 20,117<br>(67.7)  | 11.3 | △0.9     |
| 합계   | 15,264          | 16,199           | 18,271           | 21,618           | 23,999           | 27,013           | 29,703           | 29,723            | 10.0 | 0.1      |

※ p : 잠정치, ()안은 비중

※ CAGR : 2002년~2009년 연평균 증감률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방송통신산업통계월보·연보(재구성), 2009.12]

- IT산업의 패러다임도 가전에서 장비 및 IT 기기를 거쳐 점차 SW 및 IT 서비스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였으며, 앞으로 SW와 IT 서비스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표 1-2> IT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단위 : 억달러)

| 순위 | 1989년     |      |    | 1999년     |       |     | 2009년     |       |    |
|----|-----------|------|----|-----------|-------|-----|-----------|-------|----|
|    | 업체명       | 시가총액 | 국적 | 업체명       | 시가총액  | 국적  | 업체명       | 시가총액  | 국적 |
| 1  | IBM       | 541  | 미국 | Microsoft | 6,044 | 미국  | Microsoft | 2,685 | 미국 |
| 2  | Hitachi   | 344  | 일본 | Cisco     | 3,551 | 미국  | Google    | 1,970 | 미국 |
| 3  | panasonic | 341  | 일본 | Intel     | 2,745 | 미국  | Apple     | 1,910 | 미국 |
| 4  | Toshiba   | 284  | 일본 | Nokia     | 2,222 | 핀란드 | IBM       | 1,709 | 미국 |
| 5  | NEC       | 194  | 일본 | IBM       | 1,925 | 미국  | Cisco     | 1,377 | 미국 |
| 6  | Fujitsu   | 191  | 일본 | Oracle    | 1,581 | 미국  | Oracle    | 1,229 | 미국 |
| 7  | SONY      | 171  | 일본 | Dell      | 1,301 | 미국  | HP        | 1,218 | 미국 |
| 8  | Sharp     | 146  | 일본 | Ericsson  | 1,286 | 스웨덴 | Intel     | 1,127 | 미국 |
| 9  | Lucent    | 139  | 미국 | Qualcomm  | 1,247 | 미국  | 삼성전자      | 872   | 한국 |
| 10 | sanyo     | 135  | 일본 | SONY      | 1,223 | 일본  | Qualcomm  | 774   | 미국 |

\* 시가총액은 각 연도 12.31일 기준(통신서비스 업체는 제외)

[지식경제부, IT산업비전 2020, 2010.10.12]

#### 다. 국내 인터넷기반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 1) 인터넷 비즈니스의 글로벌 경쟁력 취약

-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및 이용률의 확대 등 인터넷 인프라 측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실제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준임.
- 우리나라의 2009년 전체 수출 391조원 중 IT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조원 (약 43%)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그 중에서 IT 제품의 수출 비중도 1 위이지만, 인터넷기반서비스 등 IT 서비스의 수출 비중은 28개국 중 27위로 IT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매우 낮음(기획재정부, 2010년 국가경쟁력보고서).

<표 1-3> 국내외 SNS 방문자수, 페이지뷰 1년간 추이 비교

| 도메인          | 2009년9월 |            | 2010년9월 |           | 성장율    |         | 서비스 시작일 |
|--------------|---------|------------|---------|-----------|--------|---------|---------|
|              | 방문자수    | 페이지뷰       | 방문자수    | 페이지뷰      | 방문자수   | 페이지뷰    |         |
| cyworld.com  | 22,079  | 11,792,018 | 24,653  | 9,211,123 | 11.7%  | -21.9%  | 1999.9  |
| me2day.net   | 2,046   | 49,606     | 3,964   | 30,767    | 93.7%  | -38.0%  | 2007.2  |
| facebook.com | 984     | 15,873     | 7,380   | 259,243   | 649.9% | 1533.3% | 2004.2  |
| twitter.com  | 1,379   | 9,302      | 8,654   | 175,576   | 527.7% | 1787.5% | 2006.7  |

[동아일보, 2010.10.19]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SW 이용이 증가하면서 모바일 SW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국내의 데이터 등 SW 매출 비중은 2013년 26%에 그쳐 일본(44%), 미국(35%)보다 훨씬 뒤처질 것으로 전망됨(OVUM, 2008.10).

## 2) IT 활용 저조 및 신규 서비스 확산 미흡

- 2009년 기준 우리나라 IT 산업의 GDP 비중은 8.3%로 GDP 성장에 0.4% 포인트 기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전체 산업에서 인터넷을 비롯한 IT의 활용도는 10% 이하로 저조함(통계청, 전자신문, 2010.12.16).
-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물정보통신서비스(M2M) 등 신규 인터넷기반 서비스가 향후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적절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서비스의 확산이 저해되고 있음.
- 각종 정부지원과 모바일 SW 중요성 부각 등으로 인해 벤처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면서 2010년 벤처 기업의 수는 2001년의 두배를 넘어선 2만 4,470개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음.

## 3) 인터넷기반서비스 시장의 경쟁 및 상생기반 미약

- 우리나라 인터넷기업은 소수 대기업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임.

<표 1-4> 포털의 서비스별 시장점유율

| 서비스  | 포털 순위(%는 시장점유율)                                              |
|------|--------------------------------------------------------------|
| 검색   | 네이버(78.3%), 다음(10.8%), 엠파스(4%), 야후(3.9%), 구글(1.6%), 파란(0.6%) |
| 뉴스   | 다음(34.6%), 네이버(31.7%), 네이트(7.7%), 야후(7.1%), 엠파스(5.1%)        |
| 커뮤니티 | 다음(58.7%), 네이버(33%), 싸이월드(5%)                                |
| 블로그  | 네이버(76.6%), 다음(14%), 엠파스(3%),야후(2.6%)                        |
| 이메일  | 다음(45.1%), 기타(29.6%), 네이버(19%), 파란(6.3%)                     |

[Korean Click(2007) 재구성]

- 선두기업이 지속적 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중소 인터넷 기업의 성장기반 약화와 신규 서비스 진출에 많은 제약이 예상됨.

## 2.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국내외 법제도 동향

### 가.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국내 법제 현황

- 이 연구의 대상인 “인터넷기반서비스”는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접속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Internet Based Services’, 즉 다음과 같이 인터넷을 기반(활용)으로 하여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함.
  - 정보(인터넷광고 포함)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매개하는 서비스
  -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거나 거래를 매개하는 서비스
  - 사물정보통신(M2M) 서비스
  -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Cloud Computing Service)
  - 인터넷기반 결제서비스
  - 인터넷기반서비스가 서로 결합되거나 인터넷기반서비스 이외의 다른 서비스 또는 기술과 융합된 서비스
  - 이상의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처리, 서비스 제공·이용사실 또는 당사자의 인증, 정보보호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규율과 관련되는 현행 법률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등 20여개가 존재함.

-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들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외에, 다수의 개별 법률에서 인터넷기반서비스별로 특별히 규율하고 있음.

<표 1-5>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주요 법률

| 구 분     | 서비스          | 소분류       | 근거법령           |
|---------|--------------|-----------|----------------|
| 콘텐츠 서비스 | 정보제공         | 인터넷언론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         |              |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
|         |              |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법     |
|         |              | 인터넷광고     | 정보통신망법         |
|         |              |           | 표시·광고공정화법      |
|         |              | 인터넷게임     | 게임산업진흥법        |
|         |              | 오락정보      | 음악산업진흥법        |
|         |              |           |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
|         |              | 교육정보      | 이러닝산업발전법       |
|         |              | 위치정보사업    | 위치정보법          |
|         | 기타 정보제공      |           | 정보통신망법         |
|         |              |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 플랫폼 서비스 | 인터넷거래        | 전자상거래     | 전자거래기본법        |
|         |              |           | 전자상거래소비자법      |
|         | 정보중개         | 포털서비스     | 정보통신망법         |
|         |              | 전자상거래중개   | 전자상거래소비자법      |
|         | 업무지원         | SaaS/ASP  | 소프트웨어산업발전법     |
|         | 인터넷거래 지원     | 문서교환서비스   | 정보통신망법         |
|         |              |           | 전자무역촉진법        |
|         |              |           | 물류정책기본법        |
|         |              | 전자지불서비스   | 정보통신망법         |
|         |              |           | 전자금융거래법        |
|         |              | 전자문서보관서비스 | 전자거래기본법        |
|         |              | 인증서비스     | 전자서명법          |
|         |              | 집적정보통신서비스 | 정보통신망법         |
|         | 인터넷접속 및관리 지원 | 보안관리서비스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         |              | 도메인관리서비스  | 인터넷주소자원법       |

- 한편, 최근 들어 사물정보통신(M2M),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인터넷광고, P2P 서비스 등의 진흥·지원 또는 규제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 나. 국외의 인터넷 관련 법제 동향

### 1) 미 국

- o 미국은 사이버보안, 컴퓨터범죄,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인터넷 내용규제, 소비자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등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입법을 통해 대응함과 아울러, 최근 들어 인터넷산업 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각종 시책과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o 2010년 3월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회생 및 재투자 활성화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 따라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을 수립하여 발표함.
  - 경기부양과 통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계획으로서 농촌 및 도서 지역의 브로드밴드 인프라 확산을 중심으로 72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제시함.
- o 2009년 9월 ICT 인프라구축 비용절감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데이터센터 통합 등을 통해 ‘11년부터 모든 정부부처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함.
- o 2005년 FCC는 인터넷 산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인터넷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망중립성의 4대 원칙을 발표한 이후, 최근 2대 원칙을 추가하여 망중립성의 6대 원칙을 제시함.
  - 1) 콘텐츠 차별금지, 2)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차별금지, 3) 단말기기 차별금지, 4) 경쟁권 보장, 5)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인 대우의무, 6) 망관리 관련 정보공개의 투명성 보장
  - FCC는 2010년 12월 21일 망중립성 보장을 위한 규제안을 승인하여 2011년 초에 시행 예정임.
- o 미국은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사업자 보호를 위한 인터넷사업자의 책임 제한 제도가 발달하여 인터넷 콘텐츠 활성화에 기여.

- 「통신법」 제230조를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원칙’을 도입하여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적인 콘텐츠를 인지하고 이를 삭제시 삭제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
- 19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제512조(ISP로서의 면책)에서는 명시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 의무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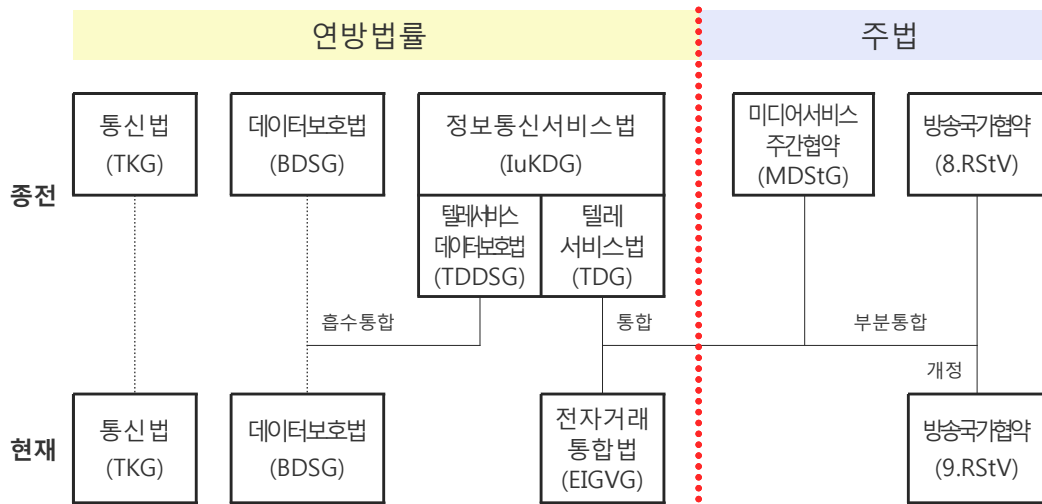
## 2) 영 국

- o 영국도 각종 입법을 통해 공정경쟁 등 시장규제, 이용자 보호, 정보보안, 개인 정보보호 등의 법적 이슈에 대응하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 인터넷사업자의 면책, 자율규제 촉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신규서비스 도입과 산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방안과 제도를 강구하고 있음.
- o 영국정부는 ‘Digital Britain’ 정책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고 IT 서비스 보급을 확대하는 전략적 비전을 제시함(2009.1.29).
- o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1996)은 제3자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행위와 관련하여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그 명예훼손적 내용이 더 이상 게시되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면책함.
  - 또한 명예훼손성 글의 게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면책대상이 되지만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여야 함.
- o 영국정부의 경우 스팸메일 등 인터넷 내용규제에 있어서 정부에 의한 강제적 규제보다는 인터넷의 발전가능성 저해, 표현의 자유 제약 위험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사업자단체에 의한 자율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음.
- o 한편,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영국정부는 ISP의 트래픽 관리와 많은 대역폭을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과금의 필요성을 들어 EU의 망중립성 원칙 권고안에 부정적인 입장임(BBC, 2010.11.17).

### 3) 독 일

- 2007년 1월에 제정된 독일의 「전자거래통합법」(EIGVG)은 인터넷 분야의 기본 법적으로서 인터넷 서비스를 방송과 통신의 중간영역인 “텔레미디어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음.
  - 「전자거래통합법」(EIGVG)은 1997년 7월에 제정된 「연방정보통신서비스법」(IuKDG)과 주법인 「미디어서비스주간협약(MDStG)」을 통·폐합하여 연방(통신형태의 텔레서비스)과 각주(방송형태의 미디어서비스)에 분산된 텔레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관할권을 연방정부가 갖도록 함.
- 「전자거래통합법」(EIGVG)의 세부법률인 「텔레미디어법」(TMG)은 텔레서비스와 미디어서비스를 “텔레미디어서비스”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게 하고
  -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소재지원칙(Herkunftslandprinzip, 제3조), 시장진입의 자유(제4조), 정보제공의무(제5조), 데이터보호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함.
- 「정보통신서비스법」(IuKDG)은 저작권 침해와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1997년에 제정된 「정보통신서비스법」은 인터넷 정보매개사업자가 제3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사실을 인식하고, 그 콘텐츠 이용을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 2001년에 개정된 「텔레서비스법」(TDG)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에 의해 전송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감시하거나 위법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음을 규정함(제8조제2항).

<그림 1-5> 독일의 방송정보통신법 체계



o 2002년 8월에 체결된 「청소년미디어보호에 관한 주간협약」(JMStV : Jugendmedienschutz Staatsvertrag der Länder)에 따라 기존 방송영역의 자율 규제기구인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텔레미디어서비스에 있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이 가능함.

- 자율규제기구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승인기간은 4년으로 연장 가능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승인 취소도 가능함.
- 승인받은 자율규제기구는 자율규약의 범위 안에서 회원이 주간협약과 이 협약에 근거한 자율규약·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짐.
-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하여 자율규제를 받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는 청소년보호 담당관 설치의무를 면제받음.

o 그 밖에 인터넷 인프라 고도화와 관련하여 연방경제기술부는 2009년 2월 인터넷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독일 브로드밴드 전략’(Breitbandstrategie)을 수립하여 2015년까지 독일 가정의 75%에 50M급 이상의 광대역망을 보급할 계획

#### 4) EU

o EU는 인터넷의 발전과 ICT의 활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침과 계획 등을 수립·발표함.

- 「접속 및 상호연결 지침」(Access and Interconnection Directive, 2002/19/EC, 2002.3)을 통해 투명성, 비차별, 회계분리, 특정 네트워크설비 접근제공의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등 망중립성의 원칙을 제시함.
- 「전자상거래 지침」(E-Commerce Directive, 2000/31/EC. 2000.6.8)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 의무가 없다는 점과 전자계약의 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2008년 2월 「RFID 관련 제조업체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자 보호의 기준을 제시하고, 2009년 6월에는 사물 정보통신(IoT)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14가지 Action plan을 발표함.
- 2013년까지 전 가정에 2M급 광대역망 보급을 목표로 ‘디지털 유럽’(Digital Europe, 2001.3)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2020년까지 ICT를 활용한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성장 및 통합발전을 추진하고자 ‘i2020 전략’(i2020 initiatives)을 발표함(‘10.3.3).

## 5) 일 본

- 일본의 경우 인터넷의 규율은 민법, 상법, 형법 등 기존 법체계와 정보통신망에 대한 부정한 접근 규제, 인터넷 정보매개사업자의 책임 제한, 전자메일 송신의 적정화 등 특정현안 중심의 개별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부정액세스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1999)
  -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2001)
  - 「특정전자메일 송신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2002) 등
- 2007년 12월 6일 일본 총무성은 ‘통신·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 최종보고서’에서 인터넷 분야를 포함한 방송통신 관련 서비스를 규율하는 법제를 정비하여 통합적이고 수평적인 새로운 통합 법체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함.
  - 법체계의 개편은 1)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2) 보편적 서비스의 보장, 3) 정보통신네트워크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하며,

- 방송통신 서비스를 전송인프라, 플랫폼, 콘텐츠의 3계층으로 구분하고 각 계층별 서비스 특성에 맞는 규율원리에 따른 규제 필요성을 강조함.
- o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물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2005)을 제정·보급하고
- 총무성의 「ICT 유신(維新)비전」(2009.12), 경제산업성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발전계획(2010.8.6) 등을 통해 스마트 클라우드 서비스 촉진, 고용창출, 광대역망 보급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 3.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과 현행법제의 한계

가. 인터넷기반의 다양한 응용서비스 발전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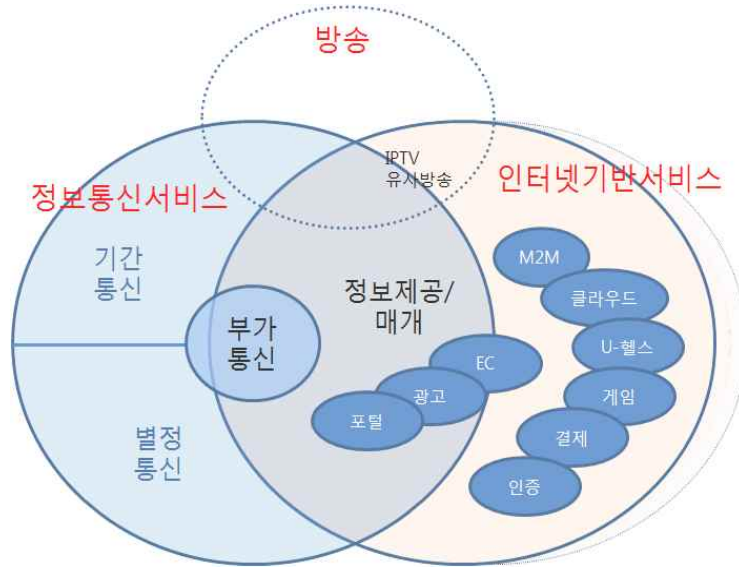
#### 1) 필요성

- o 2009년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의 규모는 29조 7,230억원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하였으나, 인터넷 활용산업 부문은 0.9%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o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합적·체계적 발전과 성장동력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함.

#### 2) 현행 법제의 문제점

- 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은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포괄적·통합적 수용을 위한 법적 개념범위에 한계
- o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은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포괄적·통합적 수용을 위한 법적 개념범위에 한계가 있는 바, 인터넷기반서비스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율 및 진흥을 위하여 법제 개선이 요구됨.

<그림 1-6> 인터넷기반서비스-정보통신서비스-부가통신역무간 관계도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역무 개념으로는 인터넷광고, 전자결제, 사물지능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 “타인의 통신 매개”와 관계없는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수용하기 어려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표 1-6>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현황

| 구 분  | 음성<br>정보<br>제공 | 정보<br>제공<br>(PC통신) | 인터넷<br>서비스 | 고도<br>팩스 | 카드<br>조회 | 컴퓨터<br>예약<br>(CRS) | 전자문<br>서교환<br>(EDI) | 정보<br>처리 | 기타    | 계      |
|------|----------------|--------------------|------------|----------|----------|--------------------|---------------------|----------|-------|--------|
| 사업자수 | 1,417          | 1,545              | 20,838     | 339      | 114      | 45                 | 55                  | 379      | 1,166 | 25,900 |
| 점유비  | 5.5%           | 6.0%               | 80.5%      | 1.3%     | 0.4%     | 0.2%               | 0.2%                | 1.5%     | 4.5%  | 100.0% |

[KISDI, 통신시장 분류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8]

-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도 “정보의 제공 또는 매개”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정보의 제공 또는 매개”에 해당하지 않는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 신규 또는 융합적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진흥시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부재

- 서비스별 개별입법은 소관부처 중심의 정책을 강화시켜 전체 인터넷서비스 산업의 종합적·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 법제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근거법으로는 미흡함

나. 새롭게 등장하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시장진입 촉진 및 경쟁환경 조성

1) 필요성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서비스의 창출 및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공정경쟁·상생협력의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2) 현행 법제의 문제점

가) 인터넷기반서비스의 기능·특성에 맞는 진입절차의 미비로 인한 신규 서비스의 시장 진입 및 이용자 편익 향상에 한계

- 신규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개별 서비스별 입법방식은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한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을 어렵게 함.
- 합리적 시장진입 요건을 마련하여 인터넷기반 서비스의 자연스런 진화를 유도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인터넷기반서비스의 공정경쟁·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적 수단 미흡

- 경쟁환경의 조성은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다양화와 품질고도화를 촉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중요함
- 적극적인 규제정비 및 사업환경 개선을 통하여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상생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다. 다양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공정한 제공·이용환경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

## 1) 필요성

- 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신뢰성 제고와 서비스 품질제고,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서비스 이용의 공통규범 정립 및 일관성 유지 필요.

## 2) 현행 법제의 문제점

### 가)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자보호 관련 공통 규범의 부재

- 인터넷기반서비스가 다양화·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무의 공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통일기준이 필요하나, 현행 법체계에서 인터넷기반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는 이용자보호와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기반서비스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함.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공정한 제공·이용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 규범으로는
  - 사업자 및 서비스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조작실수 등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절차 마련
  - 서비스 거래사실의 확인
  - 표준약관제도, 간편한 분쟁조정제도 등 정립 필요

### 나)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이용관계 규율 및 이용자보호의 법적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 M2M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규 서비스의 도입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의 이용·보호, 정보시스템 보안 등 관련 법적 이슈의 체계적 검토와 법제도 정비가 필요함.
-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법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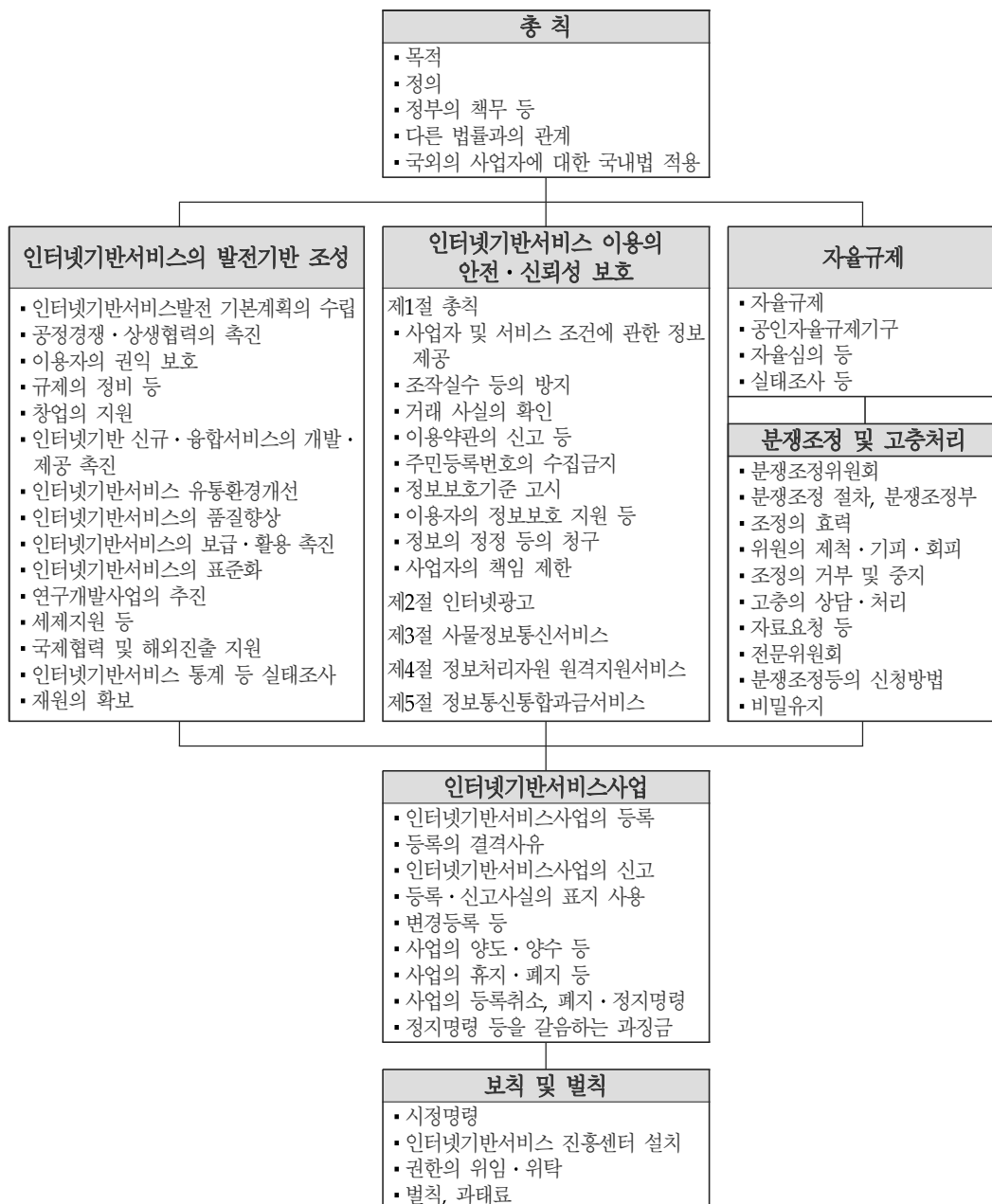
## 4. (가칭)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 가. 입법목적

- 시장진입의 자유와 사업자의 자율성·책임성에 기초한 시장참여 시스템 구축
-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을 위한 공정경쟁·상생협력 환경의 조성 및 진흥시책의 체계적인 추진 근거 마련
-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한 서비스 제공·이용환경 조성

## 나. 법안의 구성

<그림 1-7> (가칭)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법(안) 구성도



○ 이 법(안)은 전체 8장 9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됨.

- 제1장 총칙
- 제2장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기반 조성
- 제3장 인터넷기반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신뢰성 보호
  - 제1절 총칙
  - 제2절 인터넷광고
  - 제3절 사물정보통신서비스
  - 제4절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
  - 제5절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
- 제4장 자율규제
- 제5장 분쟁의 조정 및 고충의 처리
- 제6장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
- 제7장 보칙
- 제8장 벌칙

○ 이 법(안)의 내용을 입법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표 1-7> 세부 입법필요성과 규정 내용

| 구 분                                     | 해당 규정 내용(조문)                                                                                                                                                                                                                                                                                                                       |
|-----------------------------------------|------------------------------------------------------------------------------------------------------------------------------------------------------------------------------------------------------------------------------------------------------------------------------------------------------------------------------------|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포괄적·통합적 수용을 위한 법적 개념 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제1조)</li> <li>▪ 정의(제2조)</li> <li>▪ 정부의 책무 등(제3조)</li> <li>▪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li> <li>▪ 다른 법률의 개정·폐지(부칙 제2조)</li> </ul>                                                                                                                                                                 |
| 시장진입의 자유와 사업자의 자율성·책임성에 기초한 시장참여 시스템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진입의 요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등록·신고(제80~84조)</li> <li>- 사업 양도·양수·휴지·폐지 등 신고(제85~86조)</li> <li>- 사업의 등록취소, 폐지·정지명령(제87~88조)</li> </ul> </li> <li>▪ 참여형 규제정비(제9조)</li> <li>▪ 정보제공 매개사업자의 책임제한(제29조)</li> <li>▪ 자율규제의 활성화(제4장)</li> </ul> |

|                                                                     |                                                                                                                                                                                                                                                                                                                                                                                                                                                                                                                                                                                                                   |
|---------------------------------------------------------------------|-------------------------------------------------------------------------------------------------------------------------------------------------------------------------------------------------------------------------------------------------------------------------------------------------------------------------------------------------------------------------------------------------------------------------------------------------------------------------------------------------------------------------------------------------------------------------------------------------------------------|
| <p><b>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을 위한 공정경쟁·상생협력 환경의 조성 및 진흥시책의 체계적인 추진근거 마련</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 시책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li> <li>- 공정경쟁과 상생협력 촉진(제7조)</li> <li>- 창업의 지원(제10조)</li> <li>- 신규·융합서비스 개발·제공 촉진(제11조)</li> <li>- 인터넷기반서비스 유통환경 개선(제12조)</li> <li>- 인터넷기반서비스 품질 향상(제13조)</li> <li>-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보급·활용 촉진(제14조)</li> <li>-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표준화(제15조)</li> <li>-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16조)</li> <li>- 세제지원 등(제17조)</li> <li>-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18조)</li> <li>- 통계 등 실태조사(제19조)</li> <li>- 재원의 확보(제20조)</li> <li>- 인터넷기반서비스 진흥센터(제91조)</li> </ul> </li> <li>■ 분쟁조정(제5장)</li> <li>■ 국외사업자와의 규제형평성 보장(제5조)</li> </ul> |
| <p><b>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한 서비스 제공·이용환경 조성</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선택권 보호(제8조)</li> <li>- 사업자·서비스 조건에 관한 정보제공(제21조)</li> <li>- 조작실수 등의 방지(제22조)</li> <li>- 거래사실의 확인(제23조)</li> <li>- 약관의 신고 등(제24조)</li> <li>-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금지(제25조)</li> <li>- 정보의 정정청구(제28조)</li> <li>- 분쟁조정 및 고충처리(제5장)</li> <li>- 시정명령제도(제89조)</li> </ul> </li> <li>■ 정보보호(제26·제27조)</li> <li>■ 인터넷광고(제30~38조)</li> <li>■ 사물정보통신서비스(제39~54조)</li> <li>■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제55~61조)</li> <li>■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제62~64조)</li> </ul>                                                                     |

## 다. 법안의 주요 내용

### 1)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법적 개념 정립

#### 가) 개념정의

- 인터넷기반서비스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에 맞게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인터넷접속서비스(ISP)를 제외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안)은 모든 인터넷기반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하되,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법률 중 현실적으로 통폐합이 어려운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인터넷기반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일부법률을 제·개정 또는 폐지함.

### 2) 시장진입의 자유 보장과 사업자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 가) 시장진입의 요건 및 절차

- 인터넷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시장진입절차로 등록제와 신고제를 규정함(안 제80조부터 제85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위법행위 등이 있는 때에는 사업의 등록취소나 사의 폐지·정지, 서비스에의 접속차단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87조).

#### 나) 참여형 규제정비제도

- 특정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의 적용에 다툼이 있거나 관련 법률규정과의 충돌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절차를 통하여 사업의 개시 또는 규제정비를 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9조).

#### 다) 정보제공 매개사업자의 책임제한

- 포털, 오픈마켓 등 정보제공 매개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 또는 불법정보의 유통 사실을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함(안 제29조).

#### 라) 자율규제의 활성화

- 사업자단체가 자유롭게 자율규제기구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자율규약의 내용과 시행방법·절차 등의 적법성 및 적합성에 대한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율규제기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공인자율규제기구로 인증할 수 있으며, 공인자율규제구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의 보조, 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제재조치의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음(안 제66조·제67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율규제기구의 자율규제활동의 실태조사를 하여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율규제기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68조).

#### 3) 공정경쟁·상생협력 환경의 조성 및 진흥시책의 체계적인 추진

##### 가)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 시책의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기반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6조).
- 정부는 인터넷기반서비스 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과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상생협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창업에 필요한 법률·경영·기술 등에 관한 정보, 자금 및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창업자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투자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인터넷기반 신규·융합서비스의 개발·제공 촉진과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유통환경 개선, 품질 향상, 보급·활용 촉진, 표준화, 연구개발사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통계 등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 정부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

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0조).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의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인터넷기반서비스 진흥센터를 둠(안 제91조).

#### 나)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분쟁 및 고충의 효율적·체계적 해결

- 사업자·이용자 상호간의 분쟁의 조정과 고충의 상담·처리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터넷기반서비스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9조).
-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자 또는 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조정에 더 적합한 법정 분쟁조정기구가 있으면 그 기구에 사건을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사건 외의 사건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직접 조정함(안 제70조).
-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자 또는 사업자가 고충의 상담·처리를 신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고충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5조).

#### 다) 국내·외 사업자간의 규제 형평성 보장

- 국외에서 국내의 이용자에게 제공된 인터넷기반서비스가 청소년보호 등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사항과 관련된 경우에 국내법 적용원칙을 명확히 하여 국내·외 사업자간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함(안 제5조).

### 4) 공정한 서비스 제공·이용환경의 조성

#### 가) 이용자의 보호

- 정부는 이용자의 인터넷기반서비스에의 접근·선택권 보호,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기반서비스 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8조).
- 사업자는 서비스의 공정한 제공을 위해 사업자 및 서비스 조건에 관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 이전에 투명하게 제공해야 함(안 제21조).
- 사업자는 이용자가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용요금의 부

과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안 제22조).

- 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자신의 상호·연락처, 계약 내용과 그 이행 여부, 이용요금의 전자적 지급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거래관계 종료 전까지 발급하여야 함(안 제23조).
- 등록사업자 등 이용자의 이익, 공정경쟁 또는 공공이익의 보호와 관련성이 큰 사업자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24조).
- 사업자는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5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하여 명예·신용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그 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반론의 게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제28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이 법(안)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89조).

#### 나) 정보보호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보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사업자에게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26조).
- 사업자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안전한 제공 및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도록 권유할 수 있음(안 제27조).

#### 다) 개별 서비스의 이용관계 규율 및 이용자 보호

-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광고(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관련 유사규정을 폐지하고, 인터넷광고와 관련된 새로운 쟁점을 보완하여 규율함(안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
- 「위치정보법」의 유사규정을 폐지하고, 이 법(안)에서는 위치정보서비스를 사물 정보통신서비스로 개념 확대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율함(안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
- 「정보통신망법」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제46조의2(집적정보통신

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등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 유사규제를 폐지·통합하고, 이 법(안)에서 서비스의 제공·이용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함.

- 「정보통신망법」에서 “통신과금서비스”로 규율하고 있는 유사규제를 폐지하고, 이 법(안)에서 이를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로 보완하여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이용자의 권리,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 제2절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입법방안

### 1. 입법목적·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입법목적 및 정부의 책무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기반서비스는 사회·경제적 영향력 증대와 함께 미래 우리의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그동안 인터넷기반서비스는 정보제공, 전자상거래를 비롯하여 쌍방향·맞춤형·융복합의 다양한 응용서비스로 진화해 왔으나, 최근들어 우리나라 인터넷 활용산업 부문은 정체되는 모습을 보임
- 이 법(안)은 우리나라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2) 주요 내용

- (입법목적) 이 법(안)의 목적은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공과 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

- (정부 및 사업자의 책무) 이 법(안)의 입법목적에 따라, 정부는 인터넷의 개방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 나. 용어 정의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이 법(안)의 규율대상인 “인터넷기반서비스”는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직접적으로 활용한 서비스와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터넷기반의 지원서비스라고 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포털, 인터넷광고 등을 “인터넷기반서비스”로 규정(제13조의2제5항제7호)

- 인터넷기반서비스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신규서비스의 생성 등 지속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인만큼 서비스의 구체적 유형·종류를 기준으로 한 정의와 규율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가 갖는 기능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적절함.

<표 2-1> 기능 중심의 인터넷기반서비스 분류

| 구 분               | 대분류                 | 소분류        | 서비스 사례                      |
|-------------------|---------------------|------------|-----------------------------|
| 인터넷<br>콘텐츠<br>서비스 | 정보제공<br>서비스         | 인터넷언론      | 인터넷신문/인터넷정기간행물              |
|                   |                     | 인터넷게임      | MMORPG 서비스                  |
|                   |                     | 종합정보       | 포털사이트                       |
|                   |                     | 전문정보       | 금융/경제/가정/생활/의료/법률           |
|                   |                     | 오락정보       | 음악/영화/만화/소설                 |
|                   |                     | 교육정보       | 이러닝서비스 등                    |
|                   |                     | 인터넷광고      | 배너광고/팝광고                    |
|                   | 인터넷<br>거래서비스        | 전자상거래(B2C) | 인터넷 쇼핑                      |
|                   |                     | 전자상거래(B2B) | 기업간거래서비스                    |
|                   |                     | 전자상거래(B2G) | 정부조달서비스                     |
| 인터넷<br>플랫폼<br>서비스 | 인터넷접속<br>및관리<br>서비스 | 집적정보통신서비스  | 웹호스팅/서버호스팅/Co-location      |
|                   |                     | 보안관리서비스    | 백신서비스/맬웨어방지서비스/<br>SSL서버서비스 |
|                   |                     | 도메인관리서비스   | 도메인등록관리                     |

|  |                |                |                |
|--|----------------|----------------|----------------|
|  | 인터넷거래<br>지원서비스 | 홈페이지제작서비스      | 홈페이지 제작        |
|  |                | 문서교환(EDI)서비스   | EDI            |
|  |                | 전자지불서비스        | 전자화폐/온라인신용카드결제 |
|  |                | 전자문서보관서비스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
|  |                | 인증서비스          | 전자서명 및 인증      |
|  |                | 기타 온라인정보처리     | 온라인예약, 정보처리    |
|  | 정보제공<br>중개서비스  | 포털서비스          | 포털사이트          |
|  |                | 전자상거래중개        | 오픈마켓           |
|  | 인터넷기반<br>응용서비스 | SaaS, Open API | ASP 서비스 등      |
|  |                | 사물정보통신서비스      |                |

## 2) 주요 내용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개념)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되, 개별 서비스별 개념 분류를 병행하여 법적 규율의 구체성을 확보함.
- (개별·신규 서비스의 개념정의) 새로운 법적 규율 또는 개념정의가 요구되는 인터넷광고, 사물정보통신서비스,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 인터넷기반 결제 서비스 등에 대해 별도로 법적 개념을 정의함.
- (사업자 개념의 구분 정의)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인터넷기반서비스 사업자”로 정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포함시킴.

## 3) 인터넷기반서비스(산업) 분류 사례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인터넷산업’을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단위(활용산업), 인터넷사업 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기, 장비 등의 제조 또는 제공단위(기반산업) 및 지원하는 단위(지원산업)으로 구분함.

<표 2-2> 인터넷산업 분류체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기반산업 | 전송기기       | VoIP, 영상전화기, 페어케이블전송시스템, 동축케이블전송시스템, 광전송시스템, 신호변환기, 다중화장치 등                                |
|      | 네트워크장비     | 유선NIC, 라우터, 네트워크용 스위치, 허브, 액세스포인트, 무선NIC, 케이블모뎀, 일반가입자모뎀, xDSL모뎀, 광모뎀, 네트워크보안장비, 홈네트워크장비 등 |
| 지원산업 | 시스템소프트웨어   | 통신소프트웨어,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등                                                         |
|      | 시스템관리·유지보수 | 정보시스템아웃소싱, ASP서비스, SW유지보수, 교육훈련 등                                                          |
| 활용산업 | 유무선접속서비스   | ISDN, 인터넷전화, 전용회선서비스, 초고속망서비스, 무선인터넷서비스(WAP/ME), 무선고정통신서비스(B-WLL)                          |
|      | 네트워크접속서비스  | 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접속기반서비스, 호스팅서비스(웹서버, 스토리지), 코로케이션, 보안관리서비스, 도메인관리서비스 등                         |
|      | 응용서비스      | 고도팩스, 신용카드검색(CCIS), 컴퓨팅예약(CRS), 전자문서교환(EDI), 원격통신, 전자지불, 온라인정보처리, 인터넷전자상거래(수수료) 등          |
|      | 콘텐츠제공서비스   | 인터넷포털, 인터넷방송, 온라인게임, 온라인교육, 디지털출판물, 인터넷광고 등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내부자료(2009), 2010 한국인터넷백서 345면 재인용]

- o 유럽연합(EU)의 2002년 전자통신 Framework Directive는 방송·통신 서비스를 전송(Transmission) 단계와 콘텐츠(Content) 단계의 2가지 계층으로 분류한 규제의 틀을 제시.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o 이 법(안)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개념정의와 함께,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의할 필요가 있음.
- o 특히, 인터넷기반서비스의 기능·성격과 가장 관련성이 큰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의 관계 설정은 중요함.
- o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은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합적·체계적 수용을 위한 법적 개념범위에 한계가 있는 바,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규율 및 정책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o 기존 개별법률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중 인터넷기반서비스와 기능·성격이 일치하고, 현실적으로 통합이 가능한 서비스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이 법(안)으로 이관하여 통합규정 필요.

## 2) 주요 내용

- o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안)은 원칙으로 모든 인터넷기반서비스에 적용하되,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현행 법률의 완전한 통·폐합이 소관부처의 다른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 o (다른 법률규정의 통폐합) 「정보통신망법」 등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에 근거한 인터넷기반서비스는 이 법률에 최대한 통합 규정할 필요가 있음.
- o (다른 법률의 개정) 인터넷기반서비스와 부가통신역무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가통신역무 중 인터넷기반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부가통신역무에서 제외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함.

## 라. 국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의 적용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o 인터넷의 발전과 새로운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등장,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의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외 서비스간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자주 발생함.
  - ※ 국내 웹메일서비스의 압수수색을 우려한 외국계 서비스로의 사이버망명,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버를 해외에 두고 서비스하는 경우 등
- o 인터넷의 자율적이고 개방적이면서도 국경이 없는 구조에 대응하여 국제적 공조노력이 요구되지만 인터넷상의 콘텐츠에 대한 심의의 기준을 통일하고 규제하려는 국제적 노력은 매우 미약하고, 향후에도 가능성이 매우 낮음.
- o 국외 서비스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현실적 한계는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o 우선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및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국내 규제를 국제적 수준(Global Standard)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국외 서비스에 대한 법 집행력 강화 필요
- o 국내법을 위반하는 국외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법 적용 의지와 법 적용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 내용

- (국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 제5조는 국외에서 국내의 이용자에게 제공된 인터넷기반서비스가 다음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가의 의지를 천명함.
  - 청소년의 보호
  - 인종·성별·종교·국적 등에 따른 차별 등 불이익의 해소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
  - 국가안전보장·국방 및 통일
  -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공중 보건
  - 이용자의 중요한 권익의 보호와 구제

## 3) 입법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2007년에 제정된 독일 「텔레미디어법」(TMG)의 소재지원칙(Herkunfts- landprinzip, country of origin principle 제3조)

## 2.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기반 조성

### 가. 개요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합적·체계적 발전과 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기반의 조성이 필요함.
- 이 법(안)은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2) 인터넷기반서비스 진흥센터의 설치·운영(제91조) 등 정책추진체계를 마련하고,
  - 공정경쟁·상생협력의 촉진, 이용자의 권익 보호, 규제 정비, 창업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인터넷기반서비스 통계 등 실태조사, 재원의 확보 등 정책추진 수단을 도입·규정함과 아울러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개발 촉진, 유통환경 개선, 품질 향상, 보급·활용촉진, 표준화,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인터넷기반서비스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 그 밖에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국외 서비스에 대한 국내법 적용원칙 등도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과 직·간접으로 관련됨.

#### 나.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 계획의 수립·시행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o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 걸친 인터넷의 영향력 증대에 걸맞게, 인터넷기반서비스를 미래 정보통신분야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체계적·종합적 시책 마련과 추진이 요구됨.
- o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시책과 계획은 미래지향적, 글로벌 지향적, 시장중심의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추진에 있어서 일관성과 지속성이 특히 요구됨.

##### 2) 주요 내용

- o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촉진을 위하여 범국가 차원의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o (시행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에 따라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 및 기술동향 등을 감안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다. 공정경쟁·상생협력의 촉진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o 공정경쟁환경의 조성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은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다양화와 품질고도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중요함.

- 인터넷기반서비스 시장에 있어서도 신규 서비스 사업자가 시장을 선점한 사업 자들에 의해 불합리한 피해를 당하지 않고 유효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에 적합한 경쟁 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2) 주요 내용

- (공정경쟁·상생협력 시책강구) 정부는 인터넷기반서비스 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과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함.
- (상생협력평가) 인터넷기반서비스 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상생협력을 위한 경쟁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상생협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상생협력평가 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상생협력평가의 목적달성을 위해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게는 주과수할당 심사시 가산점 부여, 과징금의 일부 감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 참여의 우선권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함.
- 사업자간의 자율적인 상생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라. 이용자의 권익보호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이용자의 권익보호는 서비스의 품질과 인터넷 이용문화의 향상을 가져 옴으로써 궁극적으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
- 사실상 특정 소프트웨어 또는 콘텐츠만을 사용토록 하는 등의 서비스 제공행위로부터 이용자의 합리적인 접근·선택권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사업자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됨.

### 2) 주요 내용

- (이용자 권익보호 시책강구) 정부로 하여금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행위 등 금지) 사업자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제공과 관

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이용자의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

#### 마. 참여형 규제 정비제도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o 모든 인터넷기반서비스 사업을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당해 서비스의 공공성, 시장 상황, 사회·문화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의 시장진입규제(신고제, 등록제, 허가제, 인가제 등)를 입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보호를 위해 바람직함.
- o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고 끊임없이 신규·신종 서비스가 등장하는 까닭에 등록·신고제를 통해 모든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o 그러나 통상적인 법제정비의 경우 관계 부처간 입장 조정의 어려움과 입법과정 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 등으로 인해 빠르게 발전하는 인터넷 환경을 뒷받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2) 주요 내용

- o (사업자의 규제정비 등 심사청구권) 특정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의 적용에 다툼이 있거나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법률의 규정이 충돌함으로써 인하여 사업의 개시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에 규제의 정비 또는 사업개시 및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 o (사업개시 또는 서비스 제공의 허용)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 이 법에 따른 사업의 개시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인정된 때에는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개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 3) 입법례

- o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안)」(2010.11.16 국무회의 의결)
  -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함에 있어 규제기준의 불합리한 적용으로 피해

가 우려될 경우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국민의 청구를 받아 국민 권익위원회가 규제형평심사를 거쳐 규제기준의 합리적 적용 방향을 권고하는 “규제형평제” 도입.

## 바. 창업 등의 지원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창의적인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지속적인 창출을 통한 산업기반의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 등 신규 기업의 창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부터 지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창업 후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현재 각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육성 정책의 대부분이 창업초기 단계에 집중되어 있음.

### 2) 주요 내용

- (정부의 창업지원)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창업에 필요한 법률·경영·기술 등에 관한 정보, 자금 및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투자법인·단체의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 경영지도 및 자문 그 밖에 법률·경영·기술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하여 창업자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투자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세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행정적·재정적 지원) 정부는 협회 등 사업자간 협력단체의 설립·운영, 공동연구개발 추진, 인터넷기반서비스 보급촉진사업 등 인터넷기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등록사업자 또는 신고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사. 인터넷기반 신규·융합서비스의 개발·제공 촉진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은 자동차·의료·에너지·조선·건설·농수산물·섬유 등과 융합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끊임없이 창출해 가면서 이중 산업간 융합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앞으로 천문학적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이다.
- 융·복합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산업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 2) 주요 내용

- (시책강구의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물정보통신서비스,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신규 또는 융합 인터넷기반서비스를 개발하여 산업화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기반조성의무)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또는 융합 인터넷기반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
- (시범사업의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인터넷기반서비스 및 인터넷기반 융합서비스의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 및 보급촉진 등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민관 실무협의회 운영) 신규 또는 융합 인터넷기반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체제 구축 필요.

## 아.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유통환경 개선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향후 인터넷기반서비스는 전통적인 웹방식에 의한 제공 외에,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됨.
- 신규 또는 융합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서비스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기반의 조성이 필요함.

### 나) 주요내용

- o (유통구조 개선 제도·시책 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o (사업자 의견의 반영)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거나 시책을 강구할 때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함.

#### 자.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품질향상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o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임

##### 2) 주요 내용

- o (서비스 품질향상 노력)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o (서비스 품질의 측정·평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평가할 수 있음.

#### 차.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보급·활용 촉진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o 다양한 서비스가 융·복합화 되고, 신규 서비스가 창출되는 것 못지않게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이러한 수요가 다시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
- o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보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의 정비 등 이용환경의 개선과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됨

##### 2) 주요 내용

- o (이용환경 개선시책)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보급·활용을 촉진

- 하기 위하여 제도정비 등 인터넷 이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보급·활용 촉진사업)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의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카.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표준화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표준화는 매우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있어서 상호연동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1) 망 외부효과의 증진, 2) 불확실성의 감소와 비용절감, 3) 중복 투자방지 등의 장점을 가짐.

##### 2) 주요내용

- (표준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인터넷기반서비스 이용환경 및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인터넷기반서비스와 관련된 컴퓨터프로그램 언어, 서비스, 플랫폼, 기술 및 제품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사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연구개발이라 함은 자연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원리를 탐색하고 해명해서 그 성과를 실용화하는 일을 말함.
- 인터넷기반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을 장려하여 산업활성화의 동인이 되게 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 내용

- (연구개발사업 추진) 정부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다양성·가용성·확장성의 보

장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 등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음.

- o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출연금을 받아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 o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하여 1) 연구기관등을 활용한 기술협력 및 기술지도, 2)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 연구개발사업으로 생긴 지식재산권의 무상양여 또는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 허락의 알선, 4) 연구개발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연구기기·설비 등의 사용권 부여 또는 그 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과.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o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활동의 효율적인 제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적임.
- o 따라서 정부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적 동향 파악 및 외국·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추진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나) 주요내용

- o (국제협력) 정부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추진하여야 함.
- o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 및 해외진출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1)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2) 국제표준화의 추진, 3) 국제공동연구개발, 4)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5)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등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 하. 인터넷기반서비스 통계 등 실태조사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로 분산됨으로 인해 현재 사업체수, 매출액, 서비스 형태, 고용인원 등 인터넷기반서비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통계 또는 현황자료가 부족한 상황임.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통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 내용

- (통계 등 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기반서비스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자료제출 등 요구권) 방송통신위원회는 통계 등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 또는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거. 재원의 확보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연구개발 등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요구됨.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1) 일반예산의 편성, 2) 정부 및 사업자의 출연에 의한 별도 기금의 설치, 3) 사업자 공제조합의 설립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이 법(안)은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선언하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활용 방안을 규정함.

## 2) 주요 내용

- (정부의 재원마련 책무) 정부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여러 사업 추진

## 3. 인터넷기반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신뢰성 보호

### 가. 사업자 및 서비스 조건에 관한 정보제공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보호를 위해 사업자 정보 및 서비스 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서비스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
  - 특히, 인터넷기반서비스는 비대면성을 그 특징으로 하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이로 인하여 거래안정성을 해하거나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권익이 침해될 위험성이 높음.
-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계약체결 전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조건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을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법”)은 사이버몰의 운영자에게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의무를 부과하고(제10조),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제13조).
  - 이 법은 그 수범자를 정함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 몰의 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사업자” 등 다수의 용어를 채택하고 있어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자정보 표시 등 거래당사자로서

의 필요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사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관한 표시사항은 정보를 제공하는 디바이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표시 또는 고지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사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로 하여금 모두 표시하게 할 경우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에 따라서는 이들 내용을 모두 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할 수 있으며,
- 오늘날 광고기법의 변화에 따라 사업자 및 서비스 조건에 관한 정보제공과 광고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음.

## 2) 주요 내용

- (사업자 및 서비스 조건에 관한 정보제공) 사업자는 서비스의 공정한 제공을 위해 사업자 및 서비스 조건에 관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 이전에 투명하게 제공해야 함.
- 구체적으로는 1)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사업자 등록번호 혹은 신고번호 등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과
- 1) 서비스의 명칭·종류와 내용, 2) 이용요금과 그 지급의 방법·시기 및 환불의 조건·절차, 3) 서비스의 제공 방법과 시기, 4) 청약 철회의 기한 및 계약 해제·해지의 요건, 행사방법, 효과, 필요한 서식 등에 관한 사항, 5) 서비스의 제공·이용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6) 이용자 피해구제,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등 제공하는 서비스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이 요구됨.
- (표시·고지의 형식과 방법 고지) 사업자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는 디바이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표시 또는 고지의 구체적 형식과 방법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함.

## 3) 입법례

- 「전자상거래소비자법」

- 사이버몰의 운영자에게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의무 부과(제10조)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제13조)

#### 나. 조작실수 등의 방지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o 이용자가 인터넷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작 실수로 인해 중복하여 주문을 하거나 중복 결제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o 조작실수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사후적으로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반환 등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전적으로 이와 같은 조작실수나 표시착오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o 클릭 실수의 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을 통한 동의, 결제 및 계약체결 등의 이용계약 체결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이용자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주의와 기술적 조치의무를 천명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 내용

- o (이용요금 확인·정정절차 마련)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용요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o (진정의사표시 확인) 사업자는 이용요금의 전자적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이용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여야 함.

#### 다. 거래사실의 확인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o 인터넷상에서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전자지불 등의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결제

와 관련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분쟁은 대부분 거래 당사자간의 비대면 거래의 특성에 따라 이용자가 전자지불 등 결제사항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부작위적인 실수로 인한 결제, 제3자에 의한 결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인지, 확인 및 정정을 하기 힘든 경우에 기인함.

-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러한 인터넷상의 분쟁을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 발생시에 정확한 계약에 대한 이해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적임.
-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의 책무의 하나로서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9조 제3항), 「전자상거래소비자법」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일정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거래 관련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2) 주요 내용

- **(거래사실 확인증명 발급)** 사업자는 인터넷기반서비스 제공시 이용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상호·연락처, 계약내용 및 그 이행 여부, 이용요금의 전자적 지급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발급하여야 함.
- **(거래사실정보 제공금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 사업자는 이용자의 거래사실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라. 이용약관의 신고 등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 약관의 특성상 일반적인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이 요구됨.

- 한편 이용자의 이익, 공정경쟁 또는 공공이익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약관 신고 등의 보다 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 내용

-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록사업자, 사물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신고한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의 이익, 공정경쟁 또는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인터넷기반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표준이용약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유형별로 표준 이용약관 및 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마.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금지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체의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순번, 검증번호를 부여하는 생성원칙을 가지며, 동일한 번호를 복수의 자가 보유할 수 없으며, 변경불가능한 특성을 가진 개인별 등록번호임.

#### ○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위험성

- 해외 주요국의 개인식별번호 제도를 보면 개인식별번호를 두고 있는 국가의 경우라도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강제적이거나 개인정보를 암시하는 일련번호 부여 방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개인식별번호일지라도 그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개인식별번호와 직접 관련된 법이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개별법 및 일반법 등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음으로써 규제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그 수집·이용에 있어 목적의 명확성 및 타당성이 결여되고, 현실적합성이 없으며, 유출 및 도용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규제될 필요가 있음.

#### ○ 주민등록번호 관리 및 보호법체계의 불충분

-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의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그 목적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등 명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목적보다는 사업자 편의와 마케팅 차원의 목적에서 수집·이용되는 등 타당성이 결여된 채 상업적·관행적으로 수집되고 있음.

## 2) 주요 내용

- o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사업자는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됨.
- o (수집·관리현황 대책수립) 정부는 이용자가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관리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함.

## 바. 정보보호기준 고시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o 인터넷기반서비스와 관련된 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보장과 개인정보 등 저장정보의 안전한 보호는 이용자의 보호 뿐만 아니라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임.
- o 인터넷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별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관적인 정보보호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2) 주요 내용

- o (**정보보호기준 고시·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보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사업자에게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o (**주요정보취급자의 준수 의무**)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주요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보보호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사. 이용자의 정보보호 지원 등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기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임.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는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요구되므로 사업자가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보안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선택하여 설치·이용하도록 하여야 함.

### 2) 주요 내용

- **(보안조치의 권유)** 사업자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안전한 제공 및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도록 권유할 수 있음.
- **(이용자의 동의권 보장)** 사업자는 보안조치를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제공할 때에는 프로그램의 기능, 설치·이용 및 제거 방법 등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보안프로그램 제거의 용이성 보장)** 사업자는 이용자가 보안프로그램의 제거를 원할 경우에 이를 용이하게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아. 정보의 정정 등의 청구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훼손은 물론 사생활의 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권익을 침해당한 자를 적절히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함.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제도는 정보제공에 따른 권리침해를 구제하는 주요 제도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보제공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우월적 지위 인정 등의 문제 제기를 받고 있음.
- 개방과 자유로운 정보공간으로서의 인터넷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당사자의 자기책임과 참여의 원칙에 입각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제도의 마련이 요구됨.

## 2) 주요 내용

- **(정정 등의 청구)** 인터넷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하여 명예·신용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그 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반론의 게시를 청구할 수 있음.
- **(청구 수용 여부의 통지)** 정정 등의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 **(수용 후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가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등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정·삭제하거나 반론을 게시하여야 함.
- **(분쟁의 조정)** 정정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청구인 또는 사업자는 인터넷기반서비스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자. 사업자의 책임제한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양방향 통신의 특성상 인터넷 포털,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등 콘텐츠의 제공을 매개하는 사업자의 경우 콘텐츠의 생산 또는 업로드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정보제공 매개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자주 논의됨.
- 사업자의 자기책임의 원칙과 서비스 제공의 기술적·관리적 한계 등에 따른 책임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

### 2) 주요 내용

- **(정보제공 매개사업자의 책임 제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그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사업자의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음.

### 3) 입법례

#### o 미국

- 「통신법」 제203조·제305조
-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제512조
- 「해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 o 일본

-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o 독일

- 「정보통신서비스법」(IuKDG) 제8조-제10조

#### o EU

- 「역내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특정 법률문제에 관한 유럽회의 및 이사회의 지침」 제12조-제15조

#### o 우리나라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만 국한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경우는 제외되는 불균형이 발생함.

-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저작권법 제102조제2항은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을 감면하도록 하는데, 기술적·관리적으로 위법행위의 중단이 불가능(불가항력)한 경우 당연 면책을 하여야 하므로 기술적·관리적 한계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음.

## 4. 인터넷광고

### 가. 부당한 인터넷광고의 금지 등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광고 시장의 성장은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성장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 불법·부당한 인터넷광고와 혐오스럽거나 선정적인 인터넷광고 등 청소년유해 인터넷광고의 유통은 이용자의 신뢰를 저하시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등에 규정된 부당한 인터넷광고에 관한 규정을 총괄적으로 규정하여 인터넷광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 내용

- **(부당한 인터넷광고의 금지)** 인터넷광고의 1차적 책임자인 광고주에 대하여, 소비자 기망 또는 소비자 오인가능성이 있는 인터넷광고의 게시·전송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인터넷광고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인터넷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에 대한 접근제한조치없이 공개적으로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95조).
- **(불법 재화·서비스의 인터넷광고 금지)** 이 법(안)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는 인터넷광고를 금지하며,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96조).

## 나. 인터넷광고의 구분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상업적 표현물인 인터넷광고와 인터넷 콘텐츠 사이의 식별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광고와 검색결과 등 인터넷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 내용

- (구분표시) 인터넷상에서 “광고”와 “광고가 아닌 것”의 구분이 곤란하여 이용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므로, 인터넷광고 매체사업자로 하여금 인터넷광고와 그 외의 것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와 광고가 아닌 것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3) 입법례

#### ○ 「방송법」 제73조

- 방송사업자에게 혼동방지를 위한 구분의무를 부여하고, 어린이대상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일정 크기 이상의 자막(“광고방송”)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구분방식을 규정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 혼동방지를 위한 구분편집의무를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에게 부여

※ 구체적인 편집형식에 대한 규정없음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 혼동방지를 위한 구분편집의무를 정기간행물편집인에게 부여

※ 구체적인 편집형식에 대한 규정없음

## 다. 인터넷광고의 전송제한 등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인터넷광고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요구됨.
-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규율하고 있는 인터넷광고 유사규제를 폐지하고, 이 법(안)에서 이를

보완하여 규율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인터넷광고의 전송 제한)** 전송방식의 인터넷광고에 대하여 Opt-out 제도를 두고, 전화 및 Fax에 대하여는 Opt-in 제도를 두도록 함(제32조제1항 및 제2항).
- **(인터넷광고의 전송의 위탁)** 인터넷광고에 관한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위탁자에게 부여하고,
  - 수탁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수탁자를 위탁자의 직원으로 간주함(제33조).
- **(인터넷광고 게시의 제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자·관리자의 구체적 거부 의사에 반하는 인터넷광고 게시를 금지함(제34조제1항).
  - 위반 인터넷광고에 대하여는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자·관리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제34조제2항).
- **(인터넷광고 서비스 제공의 거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광고의 전송·수신으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거나 이용자가 인터넷광고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제35조).
- **(인터넷광고 프로그램의 설치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광고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등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제36조).

## 3) 입법례

- 「정보통신망법」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대하여 Opt-out 제도를 규정하고, 전화·Fax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Opt-in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제50조제1항·제2항)

- 21:00~8:00 사이에는 전화·Fax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Opt-out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제50조제3항)
-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제50조의2)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제50조의3)
- 정보 전송 의무 제공 등의 제한(제50조의4)
-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제50조의5)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제50조의6)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제50조의7)
-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제50조의8)

○ 「전자상거래소비자법」 제24조의2

-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의 전화·Fax·e-mail 등을 이용한 구매권유광고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소비자가 구매권유광고행위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통신판매업자는 구매권유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하여는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하여서는 아니됨.

라. 인터넷광고의 집행기준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오프라인 표시·광고를 기초로 한 입법의 성격이 강해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광고 관련 각종 법령이 인터넷광고를 함에 있어서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인터넷이라는 매체특성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예를 들어 경륜·경정에 관한 광고에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륜·경정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경고문구의 크기 단위를 “밀리미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중개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7가지 사항(명칭과 영업소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한 시·도의 명칭, 대부이자율·연체이자율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o 인터넷광고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고 광고의 집행방식 및 형식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광고의 특성을 반영하는 집행방식 및 형식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신설이 요구됨.

- 각종 광고규제법령이 법정표기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라는 매체환경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법집행 내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나,
-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이라는 매체환경을 반영한 실행가능한 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인터넷광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규범수용성을 제고하여 인터넷광고 수용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음.

## 2) 주요 내용

o **(인터넷광고의 집행기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정표기사항(경고문구, 기타 법률에서 인터넷광고를 함에 있어서 표기하도록 한 사항)의 집행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마. 다른 사람의 인터넷광고 비용 증가행위 금지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o 광고계약시점에서 광고비가 결정되는 신문·방송광고와는 달리, 인터넷광고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가 해당 광고에 접속한 횟수에 따라 광고비가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 악의적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해당 광고에 접속하도록 하는 행

위를 통하여 광고비를 증가시킴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

- 2005년 5월에는 부정클릭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광고대행사가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배상해 주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미국 비즈니스위크(Business Week)는 미국의 인터넷광고 수익 중 10~15%가 부정클릭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는 등 부정클릭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부정클릭 행위자나 이를 방조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업자를 처벌하기 어렵고, 부정클릭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민사소송을 통하여 환불받고자 하더라도 장기간의 소송절차와 소송비용으로 인하여 소액 광고주의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음.
- 부정클릭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소액 광고주를 보호하고 온라인 광고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할 것이 요구됨.

## 2) 주요 내용

- **(부정클릭 금지)** 누구든지 광고주의 광고비용을 부당하게 증가시킬 목적으로 프로그램 등 기술적 수단 또는 인력을 이용하여 인터넷광고에 대한 접속건수 증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96조).

## 3) 입법례

- 「의료급여법」 제23조
  -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의료급여, 급여비용 등 부당이득금의 징수, 업무정지 명령(제23조, 제28조)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제2항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5. 사물정보통신서비스

### 가. 사물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 확보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개인의 신원·위치·상황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사물정보의 보호와 사물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는 사물정보통신서비스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요소임.
- 사물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와 사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기록·보존의무, 사물정보의 누설·변조·훼손·공개금지의무 등을 규정함.

#### 2) 주요 내용

- **(사물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사물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물정보 및 사물정보통신기반의 취급·관리 지침을 마련하거나 취급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서비스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기록·보존)**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다음의 사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사물정보통신기반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함.
- **(실태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물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음.
- **(사물정보 누설 등의 금지)**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와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물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됨.

#### 3) 입법례

○ 「위치정보법」

-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 제17조(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나. 사물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사물정보통신서비스는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사물정보통신기반을 통한 사물정보의 수집·처리 및 관련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서비스의 예상치 못한 중단은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업무처리에 막대한 피해 또는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상황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양도·합병·상속 등의 경우에는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사실을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 **(사물정보통신서비스 장애시 조치의무)**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사고 등에 의하여 사물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 대체 서비스의 제공 등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함.
- **(사업의 양도·합병·상속 등의 통지)**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등의 사실, 2)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개인위치·상황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 사물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사물정보는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 또는 물건소유자의 인격권 및 재산권에 관련된 정보(사익성)이자 사회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정보(공익성)에 해당되므로 그 수집·이용·제공 등을 규율하기 위한 일반원칙을 규정함.

### 2) 주요 내용

- **(사물정보 수집 등의 제한)** 사물정보는 오·남용시 개인의 사생활권 또는 재산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시에는 누구든지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 또는 물건의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 **(속임수에 의한 개인위치·상황정보 수집금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를 속여 다른 사람의 개인위치·상황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
- **(사물정보 수집장치 부착사실의 고지)** 사물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사물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3) 입법례

- 「위치정보법」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 라. 개인위치·상황정보의 수집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사물정보사업자와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의 관계에서 개인위치·상황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가 알아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함.
- 이 점에서 “누구든지”를 대상으로 하여 모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원칙

을 규정한 제41조와 구별됨.

- 이 조는 사물정보사업자의 임의적인 개인위치·상황정보 수집으로부터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의 개인위치·상황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통제권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 내용

- **(개인위치·상황정보의 수집시 이용약관 명시 및 동의)** 사물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가 개인위치·상황정보 수집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개인위치·상황정보 수집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위치·상황정보 수집시 중요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
- **(동의의 일부유보)**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는 개인위치·상황정보의 수집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상황정보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으므로, 사물정보사업자는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일괄적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됨.
- **(필요최소한의 개인위치·상황정보 수집원칙)** 사물정보사업자는 수집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개인위치·상황정보만을 수집해야 함.

## 3) 입법례

- 「위치정보법」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마. 개인위치·상황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개인위치·상황정보는 사물정보사업자로부터 사물정보이용사업자로 전송되어 이용되므로 사물정보이용사업자가 개인위치·상황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물정보사업자가 수집시 동의받은 것과는 별도로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함.
- 또한 개인위치·상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순 이용하는 것보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높으므로 사전 고지 및 동의 외에, 사후 통

보의무를 통해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 내용

- **(개인위치·상황정보의 이용)** 사물정보이용사업자가 개인위치·상황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요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개인위치·상황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상황정보를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은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 3) 입법례

- 「위치정보법」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바. 사물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상황정보 제공의무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이 법(안)은 사물정보사업자와 사물정보이용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사물정보이용사업자는 사물정보사업자로부터 개인위치·상황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사물정보통신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없게 됨.
-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물정보사업자가 반드시 사물정보이용사업자에게 개인위치·상황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물정보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하여 사물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 요구됨.

### 2) 주요 내용

- **(사물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상황정보 제공의무)** 이 법(안) 제43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사물정보이용사업자는 그 이용 또는 제공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상황정보를 수집한 사물정보사

업자에게 해당 개인위치·상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 3) 입법례

- 「위치정보법」 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 사. 개인위치·상황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개인위치·상황정보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 등의 동의없이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으나, 합리적인 경우에 동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수집·이용·제공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 내용

- **(이용약관 명시범위를 넘은 개인위치·상황정보 등의 이용·제공금지 원칙)**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상황정보 또는 사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이용·제공의 예외적 인정)**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음.

### 3) 입법례

- 「위치정보법」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등)

## 아. 개인위치·상황정보의 파기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사물정보사업자와 사물정보이용사업자가 개인위치·상황정보를 수집하여 이용

한 후 그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하는 것은 개인위치·상황정보의 유출과 오용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 오므로,

- 개인위치·상황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위치·상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내용

- o 사물정보사업자와 사물정보이용사업자는 개인위치·상황정보의 수집·제공등의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사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상황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함.
- o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휴지·폐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상황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3) 입법례

- o 「위치정보법」
  -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폐지 등)

자.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의 권리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o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
- o 이 법(안)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의 동의 철회권, 개인위치·상황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일시중지요구권, 열람 및 고지요구권, 오류 정정요구권 등의 권리를 보장함.

### 2) 주요 내용

- **(동의철회권)**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는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상황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음.
  - 철회의 방법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 등에 의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능함.
  -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 개인위치·상황정보 및 사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동의의 일부를 철회한 때에는 해당 부분의 정보 및 자료를 파기하여야 함.
- **(수집·제공등의 일시중지요구권)**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는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상황정보의 수집·제공등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일시 중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함.
- **(열람·고지 및 정정요구권)**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는 1) 본인에 대한 사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실 확인자료와 2) 본인의 개인위치·상황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 3) 입법례

- 「위치정보법」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 차. 법정대리인의 권리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14세 미만의 아동은 개인위치·상황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큼.
  - 이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상황정보가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 내용

-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보장)** 14세 미만의 아동은 자신의 개인위치·상황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이들이 행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은 14세 미만 아동이 행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음.
- **(법정대리인의 동의유보권 및 철회권 보장)** 법정대리인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 동의권 및 동의유보권,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철회권 및 일시적 중지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3) 입법례

- 「위치정보법」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카. 의사 무능력자 보호를 위한 개인위치·상황정보의 수집·제공 등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8세 이하의 아동, 금치산자 및 장애인 등록을 한 중증정신장애인 등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심신의 능력이 미약하여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며, 사물정보는 이를 위해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8세 이하 아동이나 중증정신장애인이 실종된 경우와 같이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개인위치·상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결정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의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 내용

- **(의사 무능력자의 개인위치·상황정보 수집·제공등의 동의 의제)** 보호의무자가 의사 무능력자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사물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또는 개인위치·상황정보의 수집·제공등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해당 의사 무능력자에는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인으로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자가 해당됨.
- 의사 무능력자를 대신한 동의권자는 다음과 같음.
  - 1) 8세 이하의 아동은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 2)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
  - 3) 장애인등록을 한 중증 정신장애인은 ① 법정대리인, ② 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 ③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의 장, ④ 정신요양시설의 장(「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

### 3) 입법례

○ 「위치정보법」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타.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개인위치정보는 급박한 위험에 직면한 인명을 구조하거나 경보를 발송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임.
-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위치·상황정보 중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함.
- 그러나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구조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적시에 구조가 이루어지는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인 방법과 절차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 내용

-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요청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사물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됨.
  - 긴급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자로는 1)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 2)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의 배우자, 3)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후견인이 해당됨.
  - 요청 대상 사물정보사업자는 통신망의 종류나 음성호출 여부와 관련 없이 긴급구조 호출이 이루어진 통신망이나 통신단말장치를 통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사물정보사업자가 그 대상이 됨.
- **(긴급구조요청의 방식)**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에 한함.
- **(경보발송의 요청)**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사물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음.
- **(사물정보사업자의 권리·의무)**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요청을 받은 사물정보사업자는 그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개인위치정보의 긴급구조 목적외 사용금지)**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상황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3) 입법례

- 「위치정보법」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파. 개인위치정보 요청의 방식 등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 및 절차가 없이 제공될 경우, 이 과정에서 개인위치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물정보통신기반을 통한 방식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긴급구조 서비스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서비스로 법률에서 정한 긴급구조기관에 한정하여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성격을 가지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감면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정부에서는 긴급구조 및 경보발송을 목적으로 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물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 및 경보발송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내용

- **(개인위치정보 요청 및 제공 방식)**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를 위해 사물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사물정보통신기반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 사물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물정보통신기반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함.
- **(비용의 감면)** 사물정보사업자는 경보발송을 하거나 긴급구조기관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
- **(통계자료의 제출)** 사물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3) 입법례

- 「위치정보법」
  -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 제31조(비용의 감면)
  -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하. 사물정보통신기반의 설치 및 제거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사물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물정보통신기반을 이용하여 개인위치·상황정보 등의 사물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을 하게 되므로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가 사물정보통신기반의 설치 사실을 인식할 것이 요구됨.
- 특정의 건물이나 물건에 사물정보통신기반을 설치하는 경우 그 물건 소유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으므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용이 종료된 사물정보통신기반을 방치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재산상, 환경상의 문제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 내용

- **(사물정보통신기반 설치의 고지 및 동의)**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사물정보통신기반을 설치하는 경우에 미리 이용자, 물건의 소유자 또는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그 법정대리인 포함)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함.
- **(사물정보통신기반 제거 및 원상복구)**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사업의 휴지·폐지, 서비스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사물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종료한 때에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사물정보통신기반을 제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함.

## 거.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의 전환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나 이용자는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여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법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가 이 법(안)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 내용

- **(손해배상책임)**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이 법(안)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를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입증책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3) 입법례

- 「위치정보법」 제27조(손해배상)

너. 사물정보 및 사물정보통신기반의 효율적 관리 등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사물정보통신서비스는 향후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전략 서비스 분야인만큼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이 요구됨.
  - 사물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 및 사물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 사물정보통신기반의 상호운용성, 사물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기준의 마련
  - 사물정보통신 식별체계 마련 및 식별표지의 표준화와 이용·보급확산 등
- 또한 사물정보통신서비스는 유·무선 통신자원을 사용하고, 사물정보통신기반을 설치하는 장치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초기 투자비와 서비스 유지비 등이 서비스의 도입·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도 있는 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시책이 필요함.

#### 2) 주요 내용

- **(사물정보 공동이용 등 시책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물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 사물정보통신기반의 공동이용 등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함.

- **(전파사용료의 감면)** 사물정보통신기반의 효율적 설치·운영을 위해 「전파법」의 개정 등을 통해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술기준의 제정·고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물정보통신기반의 상호운용성 및 사물정보의 호환성을 향상하고 사물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 및 무단절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제정·고시하고,
  -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사물정보통신 식별체계 구축)** 사물정보통신 식별체계는 사물정보와 사물정보통신기반의 효율적 관리·이용을 위해 중요하므로, 사물정보통신 식별체계를 마련하고, 식별표지의 표준화 및 이용·보급확산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의 근거를 마련함.
  - 사물정보 등의 식별체계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도입·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함.

### 3) 입법례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1조(유통의 촉진)
  - 정부는 온라인콘텐츠에 식별표지를 부착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표지와 관련된 표준체계를 개발·권장할 수 있음(제2항·제3항).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

## 6.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

가.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의 보호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등의 정보처리자원을 기술적으로 통합하여 다수 이용자가 공동으로 함께 이용하는 것

인만큼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서버 또는 데이터 센터에 집중 보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킹피해와 내부자의 악의적 유출 및 오남용 우려가 있음.
- o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정보보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2) 주요 내용

- o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의 정의)** 이 법(안)은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제2조제10호).
  - 다른 사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응용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처리자원을 원격으로 사용하게 하는 서비스
  - 다른 사람에 의한 정보처리자원의 원격 사용 또는 인터넷기반서비스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및 정보통신망 등(이하 “집적정보처리원격지원시설”이라 함)을 운영·관리하는 서비스
-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운영)**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도록 함.
  -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보호조치로는 1) 정보처리자원 및 집적정보처리원격지원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2) 정보처리자원 및 집적정보처리원격지원시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 화재·지진·수해 등의 각종 재해와 테러 등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 3) 정보처리자원 및 집적정보처리원격지원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리인원 선발·배치 등의 조치, 4) 정보처리자원 및 집적정보처리원격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부관리계획(비상시 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 및 시행, 5) 침해사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마련 및 시행 등이 있음.
- o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는 정보처리원

격지원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보보호 기본법제인 「정보통신망법」과의 합성을 확보함.

### 3) 입법례

#### ○ 「정보통신망법」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제1항

-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나.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의 긴급대응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에서는 기업의 경제활동이나 개인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모든 IT자원과 데이터가 기업 또는 개인의 수중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지배 영역으로 이전됨.
- 이용자가 정보처리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의 안전·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의 책임과 함께, 침해사고 발생시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의 긴급대응절차 규정이 필요함.
- 「정보통신망법」의 유사규제를 폐지하고 이 법(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율함.

#### 2) 주요 내용

-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의 제공 중단)**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함.
- 이용자의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다른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또

는 집적정보처리원격지원시설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집적정보처리원격지원시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대한 침해사고(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가 발생하여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청하는 경우
- o (이용자에의 통지 의무)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중단사유, 발생일시, 기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함.

### 3) 입법례

- o 「정보통신망법」 제46조의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다. 이용자 저장정보의 보호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o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 등 정보처리자원을 원격으로 빌려 사용하고 사업자의 집적정보처리원격지원시설에 각종 정보자산을 저장·관리·이용함에 따라
  -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의 파산·폐업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 기업 또는 개인의 막대한 정보자산과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는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임.
- o 이용자가 사업자의 집적정보처리원격지원시설에 저장한 정보 즉, 이용자 저장정보의 부당한 침해·도용·훼손·누설·공개 등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2) 주요 내용

- **(저장정보 침해금지)** 저장정보의 취급권한은 이용자가 가지므로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저장정보에 대한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의 접근 및 저장정보 침해·도용·훼손·누설·공개를 금지하며,
  - 사업자는 저장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저장정보 보관시설 설치장소의 고지·동의)** 이용자의 저장정보에 대한 통제권 보장을 위해 사업자는 저장정보를 보관하는 집적정보처리원격지원시설의 설치장소를 이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알린 장소와 다른 장소에 저장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서비스 이용계약 중단·종료시 저장정보의 보호)**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는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 또는 종료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동안 이용자가 자신의 저장정보를 이용·관리·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다만,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 또는 종료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30일 동안 이용자가 자신의 저장정보를 이용·관리·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저장정보의 비밀 보호)**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는 서비스의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고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해당 저장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함.
  - 다만, 이용자와 별도의 정함이 있거나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가 해당 저장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라. 저장정보 보관·관리업무의 위탁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에 있어서 저장정보의 관리책임과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가지고 있지만, 이용자가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 등 다른 사람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자, 수탁자, 저장정보의 정보주체 등 이해관

계자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업무위탁의 경우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아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며,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함.
-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경우 영세 이용자인 기업(위탁자)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수탁자)를 통제·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위탁·수탁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 내용

-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의 책임)** 이용자가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에게 저장정보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저장정보의 정보주체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이용자로서의 책임을 짐.
- 이 경우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그러나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 외의 자에게 저장정보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함.
- **(이용자의 면책)**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용자의 책임은 면제됨.
- 다만,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하여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마. 저장정보의 이전협조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의 이용자가 여건이 변경되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하거나 자신의 서버 등에 저장정보를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됨.

- 왜냐하면 저장정보는 비록 이용자의 정보이지만 해당 저장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이므로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저장정보를 다른 저장장치 등에 완전하고 안전하게 이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o 대부분의 경우에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저장정보의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을 사전에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사전에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바,
- 사전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 내용

- o **(저장정보의 이전협조)** 이용자는 언제든지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에게 저장정보의 이전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o **(사업자의 저장정보 이전비용 부담)** 사업자는 이용자와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저장정보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됨.

## 바. 보험가입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o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중간이용자, 최종이용자, S/W개발자, 콘텐츠 생산자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서비스 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의 정도와 범위는 무한히 확대될 수 있으며, 서비스 장애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을 개연성이 큼.
- 따라서 서비스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 「정보통신망법」의 유사규제를 폐지하고 이 법(안)에서 사업자의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를 보완하여 규정함.
- o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 또는 종료되는 경

우에 이용자가 자신의 저장정보를 이용·관리·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바, 이 때에 발생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보험가입 등의 의무화가 필요함.

## 2) 주요내용

○ **(집적정보처리원격지원시설 운영장애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는 집적정보처리원격지원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에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현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할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을 1) 매출액 100억 이상인 사업자는 10억원, 매출액 10억 이상 100억 미만인 사업자는 1억원, 3) 매출액 10억 미만인 사업자는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저장정보 이전비용 충당 등을 위한 계약체결)**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저장정보를 이용·관리·이전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지급보증계약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와의 보증보험계약  
－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공제조합 또는 공제단체와의 공제계약

○ **(보험가입 또는 계약체결 사실 표지의 사용·홍보)** 집적정보처리원격지원시설 운영장애피해의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또는 저장정보 이전비용 충당 등을 위한 계약체결을 한 자는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홍보할 수 있음.

## 3) 입법례

○ 「정보통신망법」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제2항

－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 및 최저보험금액 규정

사.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의 이용촉진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로서 주목받고 있는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의 이용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 요망됨.
-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 데이터센터 구축 등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 제공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등

## 2) 주요 내용

-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 제공환경의 개선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 데이터센터 구축 등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 제공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서비스 제공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예컨대,
  -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특구 지정 및 용지비용 감면, 세제 지원, 전기요금 할인 등이 가능함.
- ※ 일본의 경우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구축을 목표로 설치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전기요금 할인과 설치 투자금 지원을 계획 중이며, 건축기준법, 소방법 등의 적용 제외 추진 중
- 기업의 서비스 도입시 해당 서비스 이용료를 「조례특례제한법」상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로 보아 일정액을 세액공제하고, 서비스 도입을 목적으로 보유 IT기기 및 설비 등을 처분한 경우 손비처리 등 인정 필요
- ※ 현행 「조례특례제한법」은 각종 IT 관련 설비 등을 직접 구입해 이용한 경우에만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시설, 장비 등을 빌려 쓴 경우에는 불인정(중소기업은 일부 인정)
- 온라인 원격근무 등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 이용 환경의 조성을 위한 이용기업의 통신료, 전기료, 교통유발금 감면 등 검토 필요
- **(정보보호 안전진단의무 면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처리자원 원격지원서비스의 이용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제46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의무를 면제함.

## 7.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

### 가.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 안정성·신뢰성 확보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안전성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인터넷기반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함.
  - 이를 위해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됨.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회계처리 구분 등의 관리적 조치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동법 제57조).

#### 2) 주요 내용

-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 사업자는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회계처리 구분 등의 관리적 조치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3) 입법례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 금융기관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나.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등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통신과금서비스”로서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유사규제를 폐지하고, 이 법(안)에서 이를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로서 보완하여 규율하도록 하고,
  - 이를 통한 거래에 있어서의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 요구됨.

### 2) 주요 내용

- **(거래내용의 통지)**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 사업자는 재화등의 판매·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에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구매·이용 내역, 이의신청의 방법 등을 알려 주어야 함.
- **(거래내용의 확인)**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 사업자는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함.
- **(오류의 정정 등)**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 이용자는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 사업자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함.
- **(거래기록의 보존)**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 사업자는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함.
- **(권리구제절차)**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 사업자는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와 관련한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3) 입법례

- 「정보통신망법」
  -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 제59조제2항(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절차 마련)

- 「전자금융거래법」
  -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 제8조(오류의 정정 등)
  -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 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다.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 이용제한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통신과금서비스”로서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유사규제(동법 제61조)를 폐지하고, 이 법(안)에서 이를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로서 보완하여 규율하도록 하고,
  -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범죄적 거래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 내용

-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 사업자에게 다음의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 「청소년보호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제공하는 자
  - 제32조를 위반한 인터넷광고의 전송 및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행위를 통하여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재화·용역을 구매·이용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 8. 자율규제

#### 가. 자율규제기구와 자율규약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국경을 초월하여 수많은 이용자가 이용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터넷에 있어서 정부에 의한 공적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우회 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인터넷 정보에 대한 규제의 실행력 담보가 어렵고, 규제비용이 증가하며, 인터넷의 변화 속도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함.
- 자율규제는 규제의 효율성과 유연성, 규제비용 절감, 그리고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정부 간섭의 최소화 등 정부규제가 제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특히, 국경을 초월하여 수많은 이용자가 이용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터넷에 있어서 정부에 의한 공적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기반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자율규제 환경의 조성은 공적규제(방송통신위원회)와 자율규제간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체계를 수립하고, 인터넷기반서비스의 건전한 발전능력을 배양하는 효과가 기대됨.

### 2) 주요 내용

- **(자율규제기구 설립·운영의 자유)**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단체는 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구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
- **(자율규약의 제정·시행)** 자율규제기구는 자율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 자율규약을 정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율규약의 내용 및 시행방법·절차 등의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3) 입법례

- 유사 입법사례를 살펴 보면, 내용면에서 1) 자율규약제정에 관한 규정, 2) 자율규제조직에 관한 규정, 3) 자체심의에 관한 규정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 그 방식에서 1) 자율규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과 2) 자율규제참여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 **(국내 입법사례)** 자율규약, 자율기구, 자체심의 및 공적규제의 민간위탁 등에 관한 유사입법례 다수 존재

|      |                                                                                                                         |
|------|-------------------------------------------------------------------------------------------------------------------------|
| 자율규약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br>「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br>「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br>「전자거래기본법」 제15조<br>「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 자율기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8조<br>「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br>「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6조                                   |
| 자체심의 |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br>「방송법」 제86조<br>「청소년보호법」 제12조                                                                          |
| 업무위탁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br>「舊 방송법」 제47조 및 제49조                                                                      |

-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 : Kommission fuer Jugendmedienschutz)”의 승인을 얻은 자율규제기구(예 : FSM)에의 가입과 자율규제 위임을 의무화
- **(일본)**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노력 의무를 규정(제3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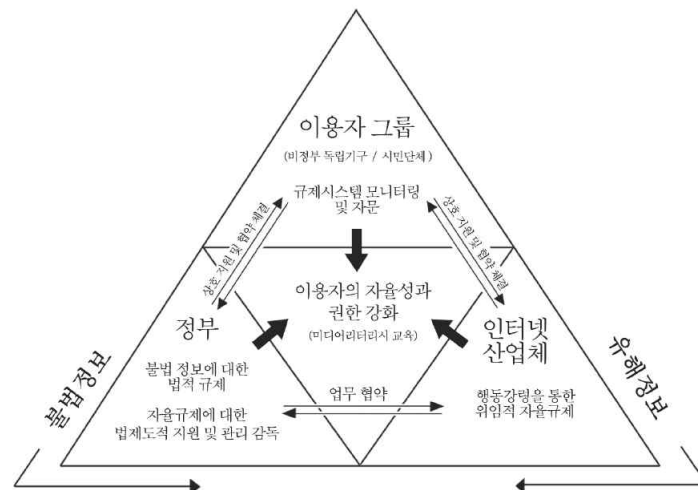
## 나. 공인자율규제기구의 인증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 자율규제는 규제에의 효율성과 유연성, 규제비용 절감, 그리고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정부 간섭의 최소화 등 정부규제가 제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반면, 공적 책임성의 부족 및 실행력의 부재 등의 비판을 받음.
- 시장건전화를 통한 산업활성화와 인터넷기반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충실한 “실질적 자율규제” 활동과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아니하거나 규제회피 목적의 “명목상의 자율규제”는 차등적으로 다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 자율규제활동의 우수성을 공적규제기관이 확인함으로써 민·관 공동규제의 기본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자율규제활동에 대한 공적지원의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o 인터넷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공적 평가를 통하여 공적규제와의 협업적 체계의 기틀을 마련함.
- 양질의 자율규제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및 참여사업자에 대한 면책 등의 제도적 기준을 마련함.

- o 공적규제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 및 자율규제를 시도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위임된 자율규제” 모형을 지지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는 연구보고서(「인터넷 콘텐츠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간 바람직한 협력방안 모색(2009.12)」를 통해서 “한국형 인터넷 콘텐츠 규제 모델 : TSE(Trigger-Stabilization-Evolution) 모델”에서 위임모형을 제시하고 있음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KISO저널을 통해서 “삼발이형 공동규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① 정부 : 법적 규제를 통해 불법내용규제에 대한 종국적 책임. 산업체가 자율규제를 제도화하도록 입법절차를 통해서 강제하거나, 규제권의 발동을 담보로 압력 행사 ② 산업 :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자율규제 활동. 규제당국과의 업무협약체결 등 사회적 법적 지위보장을 위하여 정부와 제도적 협력관계 ③ 이용자 : 규제시스템 모니터링 및 자문

## 2) 주요 내용

- o (공인자율규제기구의 인증 및 취소)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율규제기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경우 공인자율규제기구로 인증할 수 있으며,

- 공인자율규제기구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공인자율규제기구의 인증을 위한 주요 판단기준으로는 1) 공인자율규제기구 운영계획의 적정성, 2) 등록사업자등의 가입 정도 및 운영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여부, 3) 재정적 자립의 정도, 4) 자율규제 실적 및 성과, 5) 공인자율규제기구의 사회적 책임 및 공익적 기능 여부, 6)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류 또는 자율규제 영역별 공인자율규제기구의 중복 여부, 7)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및 정도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공인자율규제기구가 1) 앞의 인증기준에 위배되거나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외에도, 2)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서류 등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공인자율규제기구가 해산되었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중단한 때, 4) 공인자율규제기구가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것이 요구됨.
- o **(공인자율규제기구의 운영 및 지원)** 공인자율규제기구는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기구에 참여하고자 하거나 소속된 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한 가입조건 부여 또는 회비 징수 그 밖에 차별적 대우를 금지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인자율규제기구에 운영실태, 자율심의 내용이나 처리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정부는 공인자율규제기구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운영자금을 보조할 수 있음.

### 3) 입법례

- o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표시·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 자율심의기구등의 신고제도를 마련하고,
  - 자율심의기구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대상을 심의·처리한 결과에 따라 사업자들이 행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시정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면제함.
-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8조
  - 게임 관련 단체·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율심의기구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율심의기구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

며, 평가결과에 따라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독일)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 : Kommission fuer Jugendmedienschutz)”의 승인제도(예 : FSM)

## 다. 자율심의 등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종래에 자율규제가 활성화되지 아니한 이유는 산업문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함께 강력한 공적규제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자율규제 또는 공동규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규제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의 근거 마련이 요구됨.
  - 자율규제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면책, 적극적 참여에 대한 보상 등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독려 및 지원도 필요함.

### 2) 주요 내용

- **(자율심의의 면책)**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공인자율규제기구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 때에는 시정명령 등을 배제함.
- **(자율시정의 면책)** 시정명령의 대상인 행위를 한 등록사업자등이 공인자율규제기구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배제함.
  - 위반행위의 반복 등 공인자율규제기구의 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 **(자율심의 요청 및 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인자율규제기구에 소속된 등록사업자등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자율규제기구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 공인자율규제기구가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등록사업자등의 행위가 시

정된 때에는 제재조치를 정하지 아니함.

- **(긴급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 자율규제 사항에 대한 침해사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유관기관간 긴급정보공유체계의 구축·운영과 협조의무를 규정함.

### 3) 입법례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표시·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가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등에 대하여 그 표시·광고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자율심의기구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대상을 심의·처리한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이 행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시정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면제
  - 다만, 사업자등이 자율심의기구등이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시정한 경우라도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등 자율심의기구등의 시정만으로는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피해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라. 자율규제 실태조사 등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자율규제제도의 건전한 정착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율규제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규제 모델로서 공인자율규제기구 인증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할 장치가 요구됨.
  - 자율규제의 건전성과 공정성에 관한 공적 감독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동규제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 내용

- **(실태조사 및 시정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율규제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율규제기구의 자율규약 시행과 공인자율규제기구의 자율심의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자율규제기구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1)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기구에 참여하고자 하거나 소속된 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한 가입조건 부여 또는 회비 징수 그 밖에 차별적 대우를 한 때, 또는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때에는 공인자율규제기구 또는 자율규제기구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자료제출 요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실태조사 또는 시정명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율규제기구 또는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9. 분쟁의 조정 및 고충의 처리

가. 인터넷기반서비스 분쟁조정위원회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다종다양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제공·이용에 수반되는 갈등과 고충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됨.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면 법원의 재판으로 통칭되는 종래의 구제절차 또는 분쟁해결제도로는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분쟁과 고충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 인터넷기반서비스와 연관성을 가지는 구제수단으로서 많은 수의 기능이 마련되어 있으나,
  - 기존 구제수단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출현이 가능하며, 다수의 구제·분쟁기능의 산재로 인하여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함.

### 2) 주요 내용

-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터넷기반서비스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
- o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함.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o **(전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 o **(비밀유지의무)**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3) 입법례

- o 인터넷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약 10개의 분쟁조정기구가 운영 중이거나 설치 예정임.

| 분쟁조정기구       | 유관기관      | 관련법           |
|--------------|-----------|---------------|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 §60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통신망법 §33    |
| 명예훼손분쟁조정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정보통신망법 §44-10 |
| 언론중재위원회      | -         | 언론중재법 §7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전자거래기본법 §32   |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주소자원법 §16  |
| 저작권위원회       | -         | 저작권법 §112     |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법 §51    |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 §48-3   |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 콘텐츠산업진흥법 §29  |

## 나. 분쟁조정의 절차 등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o 인터넷기반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분쟁과 고충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합채널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사건 또는 당사자 등의 유형에 불문하고, 인터넷기반서비스와 관련된 분쟁·고충·민원 등을 접수하고,
- 종래의 각종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과 함께,
- 기존 제도로 포섭되지 아니하는 영역의 흡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 내용

- **(분쟁조정 신청)** 이용자 또는 사업자는 인터넷기반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는 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 신청인이 편리하게 분쟁조정등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이관)**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정ADR제도가 있는 경우 당해 ADR제도로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이관함.
  - 이송대상 분쟁조정기구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언론중재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 이관사건 외의 사건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직접 분쟁을 조정함.
- **(분쟁조정부)**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수(3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사건의 조정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사건별로 분쟁조정부를 구성함.
  - 분쟁조정부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함.
-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분쟁조정업무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성에 관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조정업무에서 제척하거나 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음.

- 또한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o (자료요청 등)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자료의 제출을 당사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음.

o (온라인 분쟁조정)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분쟁당사자의 출석없이 인터넷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건을 조정하게 할 수 있음.

### 3) 입법례

o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콘텐츠 거래·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름.

### 다. 고충의 상담·처리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o 사업자·이용자 상호간의 분쟁 외에, 이용자 또는 사업자의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제공·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고충을 상담·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

- 이용자 또는 사업자의 고충의 상담·처리를 통해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품질제고와 정책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2) 주요 내용

o (고충의 상담·처리절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자 또는 사업자의 인터넷기반

서비스 제공·이용과 관련된 고충의 상담·처리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충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다만, 사실조사,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15일 이내에 그 고충의 상담·처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기별로 고충의 상담·처리 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고충처리책임자 및 지역별 고충처리전담요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고충의 상담·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 고충의 효율적인 상담·처리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대학교원 등으로 지역별 고충처리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기관간 협조)** 분쟁조정위원회는 고충의 상담·처리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함.

## 10.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

가.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등록 및 신고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인터넷기반서비스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관련 개별법별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인·허가, 승인·등록, 신고, 지정 등 여러 가지 방식의 진입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표 2-3> 인터넷기반서비스 시장진입 규제방식과 해당 사업자

| 규제방식  | 해당 사업자 예시                                                                                                |
|-------|----------------------------------------------------------------------------------------------------------|
| 인가    | 위치정보사업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                                                |
| 허가    | 전자금융업자(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무), 위치정보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업자                                                          |
| 승인    |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위치정보사업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                                                       |
| 지정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 공인인증기관                                |
| 등록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금융업자(전자자금이체업무,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 등), 전자상거래사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콘텐츠사업자 |
| 신고    | 부가통신사업자, 통신판매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콘텐츠사업자                                                |
| 제한 없음 | 전자거래사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사이버물류운영자, 이러닝사업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자, 컴퓨터프로그램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이 법(안)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참여의 편리성과 자유보장, 인터넷기반서비스별 특성의 수용과 인터넷기반서비스 진흥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크게 등록제와 신고제의 두가지 진입절차를 마련함.
- 이 법(안)은 자유와 개방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고제(자기완결적 신고)를 기본으로 하되, 서비스 성격상 또는 정책적 관점에서 좀더 강화된 진입요건을 요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채택함.

<표 2-4>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 유 형                                                                                                      | 유형 예시                                                                                                              |
|----------------------------------------------------------------------------------------------------------|--------------------------------------------------------------------------------------------------------------------|
|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 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
|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저작물등을 이용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
|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
| 4.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 이 법(안)에서는 등록대상 서비스 외에는, 인터넷기반서비스 사업의 형태, 규모의 다양성과 가변성, 인터넷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신고 여부를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되,
- 서비스의 공공성·안전성 등의 특성, 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율·관리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 함.

## 2) 주요 내용

- **(등록사업자)** 1) 사물정보서비스, 2) 정보통신통합과금서비스, 3) 저작권법 제 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등록의 결격사유)**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1)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자, 4) 앞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이 아니어야 함.
-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의무신고와 자율신고)** 등록대상 서비스가 아닌 인터넷기반서비스 중 1) 사물정보이용사업자, 2) 정보처리원격지원사업자, 3) 1일 이용자수 1만명 이상 또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사업자 등 서비스의 공공성·안전성 그 밖의 특성, 이용자 보호, 이용자수,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등록·신고사실의 표지 사용)** 등록사업자들은 등록사실 또는 신고사실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음.
-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등록사업자들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사업의 양도·양수 등)** 등록사업자들이 영위하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등록사업자등인 법인의 합병·분할·상속이 있는 경우 1) 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 2)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해당 사업의 상속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나. 사업의 양도·양수, 휴지·폐지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을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이익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됨.

### 2) 주요 내용

- **(통지의무)** 등록사업자등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제공을 중단 또는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휴지·폐지 또는 중단·종료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상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신고의무)** 등록사업자등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제공을 중단 또는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휴지·폐지 또는 중단·종료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 **(휴지기간의 제한)** 사물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다.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사업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서 등록취소, 사업폐지 또는 사업정지명령 등을 할 수 있게 함.

### 2) 주요 내용

- **(등록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등록사업자가 이 법(안)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

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등록사업자 외의 사업자에 대한 사업폐지 또는 사업정지 명령)** 등록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서비스 접속차단조치 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등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비스에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재등록·신고 등의 제한기간)**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정지 명령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취소 또는 명령을 받은 것과 같은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라. 사업정지명령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기반서비스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업정지 또는 서비스 접속차단의 조치로 인하여 이용자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음.
  - 즉,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중단 또는 대체서비스의 부재로 이용자의 생명·신체 그 밖에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중요한 공익목적의 실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서비스의 중단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임.
- 과징금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임.
  -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정지 등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용자의 이익 또는 공익의 보호에 있는만큼 서비스 유지를 위한 합리적 사유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2) 주요 내용

- **(과징금의 부과 요건 및 대상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의 정지 또는 접

속차단조치가 1) 이용자의 생명·신체 그 밖에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2) 대체할 수 있는 인터넷기반서비스가 없는 때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접속차단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 과징금을 부과는 시장조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등록사업자와 신고사업자에 한하여 부과함.

- o **(과징금의 산정)**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하에서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자 등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함.

-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및 유사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하며,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o **(가산금 및 징수절차)**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독촉을 하고,

-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 8%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함.

-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 3) 입법례

- o 「위치정보법」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부과

- o 「전기통신사업법」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5(지정취소 및 과징금)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업무정지가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마. 시정명령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사업자의 부당행위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등록취소, 사업의 폐지·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적 제재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시정명령사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필요한 법적 조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자료제출 요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현장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바. 의견제출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
- 이 법(안)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 등록취소, 사업의 폐지·정지 등의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2) 주요 내용

- **(의견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1)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시정명령, 2) 등록사업자 또는 신고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정지 등의 명령, 3)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당사자는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가 구술로 의견제출을 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함.
-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의견반영의무)** 방송통신위원회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사. 인터넷기반서비스 진흥센터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이 법(안)이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기반서비스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기반서비스 진흥센터를 설치함.

## 2) 주요 내용

- **(인터넷기반서비스 진흥센터의 설치)** 정부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의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인터넷기반서비스 진흥센터를 설치함.
- **(인터넷기반서비스 진흥센터의 업무)** 인터넷기반서비스 진흥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개선 지원
  -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창업 지원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유통환경 개선 및 품질 향상 지원
  -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표준화
  -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지원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인터넷기반서비스 통계 등 실태조사
  - 자율규제의 활성화 지원 등
- **(진흥센터의 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 아. 권한의 위임·위탁

###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이 법(안)에 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나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1) 주요 내용

- **(권한의 위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안)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

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예컨대, 1)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상속신고, 휴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수리, 2)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폐지·정지명령, 3)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5)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음.

- o **(사업의 위탁)** 방송통신위원회는 1) 신규 인터넷기반서비스 및 인터넷기반 융합서비스의 사업 모델 발굴, 사업화 및 보급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2)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보급·활용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제2장 인터넷비즈니스 관련 법제도 개선과제 및 동향분석

### 제1절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발굴

#### 1. 개선과제 발굴의 필요성

원래 인터넷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 사이의 정보와 의사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인터넷의 역할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도구인인 매체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필수불가결한 공공재적인 성격까지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담론은 정보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병행하여, 사람들의 관심은 인터넷 이용의 편익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관련 사업자는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용자 또한 아무런 불편 없이 값싸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되어 아무런 문제점이 없도록 정책지원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분담하여 지니고 있다.

또한, 인터넷은 신문이나 방송, 전화와 같은 완결된 매체형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기존의 매체진흥법이나 매체규제법의 정책과 수단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도 적당하지 않으며,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환경이 도래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국가의 진흥이나 조장정책을 고려하려고 하더라도 그 서비스의 실질 내용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행정작용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터넷이 가져온 쌍방향성, 비대면성, 편리성의 특성에서 빚어지는 인터넷 이용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 또한 완전무결한 내용과 형식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며,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인터넷매체 또는 특정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내용적 이해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법제도의 문제점을 현시점에서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현 시점에서 보나온 인터넷서비스의 발전이라는 목표로 접근하였으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에 대하여는 아직 그 내용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발전 속도에 비추어 짧은 장래에 주된 서비스로 등장될 상황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 2. 현행 법제도 검토 및 대안

이 연구의 목표는 현행 법제도에 대한 검토와 앞으로 등장할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법적 분석을 목표로 하여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이슈 중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현행 법제도에 대하여는 해당 서비스 중심이 아니라 개별 법제도 또는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여 그 현황 및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즉 특정한 법제도에 대하여는 해당 법제도의 내용을 국내외 입법례 및 사례를 포함한 현황분석을 하고, 주요 법적인 쟁점 및 문제점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향후 새롭게 등장할 주요 인터넷서비스에 대하여는, 먼저 국내외 현황을 분석을 하면서 그 내용을 확정하고, 법적 쟁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아직 국내외에 인터넷서비스가 활발하게 도입되는 단계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적합한 법제도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적 논의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서비스 또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은 향후 입법과정에 자료를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예상되는 서비스에 대한 분석은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정책 형성 또는 입법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기존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되어 제기되거나 앞으로 제기될 법제도 또는 서비스를 해당 사항별로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 다만 공통적으로 각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분석에서 아래의 4가지 방향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① 신규·융복합 서비스 활성화 측면에서 다양한 신규서비스 및 융복합 서비스를 포섭하지 못하거나 법 적용의 애매함을 해소하는 방향, ② 규제 수준의 적절성을 확보 하는 차원에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유사서비스와 비교했을 시 비대칭적인 규제 개선, 국외서비스와의 형평성 확보하는 방향, ③ 이용자 권익보호 및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시 이용자에게 불편함 가중 및 사업자 위주의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자 피해 등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 ④ 기존 법제의 경직성 완화를 위해 오프라인 서비스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기존 법제를 환경 변화에 원활히 대응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 3. 시장 및 사업자 규제개선 방안

이 글은 인터넷기반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제도상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점이 필요한지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사례를 현황과 문제점 위주로 분석함으로써 장래 시장에 정착되는 경우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기관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견해가 다를 수 있으며 외부 법학전문가 4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 할 수 있었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표와 방향, 인터넷 관련 주요 이슈를 다루었으며, 2장에서는 현재 인터넷기반서비스 중에서 중요한 이슈를 선택하여 그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쟁점 및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시장 및 사업자 규제, 개인정보 등 기존에 다뤄지기도 했지만 현시점까지 지속되고 있는 관련 이슈를 검토함으로써 해결되지 않은 이슈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3장에서는 클라우드서비스, 모바일서비스 등 새롭게 등장하는 인터넷기반 서비스의 신규서비스를 중심으로 법제도적 이슈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신규서비스는 아직 시장에서 정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현재까지 등장한 문제점 위주로 논의를 하되 장래 예측가능한 문제점까지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인터넷기반 서비스에 있어서 현행 이슈는 물론이고 신규이슈까지 망라함으로써 장래 해당 이슈에 대한 논의시에 쟁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개선안 검토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2절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인터넷서비스 규제형평성 확보 방안

### 1. 국경 없는 비즈니스 시대의 도래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과 웹2.0 트렌드의 본격화로 인터넷에 기반한 서비스가 다양화·고도화 되었으며 서비스의 질과 양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등 인터넷은 국경 없는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경 없는 경제(Borderless Economy)와 국경 없는 경쟁(Borderless Competition) 시대로의 변화를 실현하였다. 또한, 인터넷의 특성상 국경의 구분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물리적 공간은 무의미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인터넷기반서비스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가별 서로 다른 비즈니스 환경과 서비스의 차이는 각국의 관련 규제 수준을 다르게 정립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과 국내 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규제형평성 관련 문제가 제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대적 흐름 및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서비스에 적합한 규제로의 변화를 통한 인터넷 규제의 미래지향적·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2. 인터넷 규제형평성 관련 4대 이슈 분석

### 가. 포털 이메일서비스 압수수색

‘09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 수사시 사건당사자가 타인과 교환한 이메일을 특정 범위 등의 제한 없이 통째로 압수하면서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이메일 압수수색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었고 일부 인터넷 이용자는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이메일로 전환하는 등 사이버 망명<sup>1)</sup> 이슈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웹 메일의 이용 당사자 및 이메일 송수신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메일 압수수색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압수수색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건의 경우라면 국내 서비스와 차별 없이 외국계 웹 메일도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여 규제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나. 제한적 본인확인제

제한적 본인확인제란 일정규모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운영할 때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최근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에서 구글, 유튜브 등 해외서비스가 제외되면서 국내 기업이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국내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규제 역차별에 대한 이슈를 제기<sup>2)</sup>하여 논란이 되었다. 또한 규제 역차별 이슈가 부각되면서 당초 입법의도와 달리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악성댓글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함께 증가하였다.

---

1) 사이버 망명론'이란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정부의 규제를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로 옮겨 활동하는 현상을 말함

2) '10.4.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인터넷 기업 CEO 간담회

근본적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도의 개선이 필요한지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우선 검토 할 필요가 있다. 폐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안 제시 없이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외 사업자가 공정한 법제도적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정부의 법집행에 대한 정책적 의지 노력이 필요하다.

#### 다. 임시조치제도

현행법(정보통신망법 44조의2)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게시물의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sup>3)</sup>해야 한다. 최근 임시조치제도를 국내 인터넷서비스 기업만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 국내외 기업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국내 기업의 불만이 증가하였다. 명예훼손 관련 사안은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서비스 기업이 책임을 다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인터넷서비스 기업이 게시물에 대한 모든 삭제 요청을 수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토론문화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임시조치제도를 이행할 수 있게 하여 이용자가 권리침해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권고하고, 단 사업자의 ‘판단에 따른 임의의 임시조치’제도(44조의3)는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폐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의 필요 여부에 대한 공적기관에 의한 판단 등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

#### 라. 지도서비스

국내 지도서비스의 경우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의 기준에 의해 해상도 및 좌표 표시 등이 제한적이다. Daum, NHN 등이 지도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가 Mash-up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을 제한하여 국내 지도 융합서비스는 해외 지도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해외 지도서비스의 경우 관련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다양한 보안상의 문제 발생 가능<sup>4)</sup>성이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군부대 위성

3) 임시조치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것

4)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태국, 러시아, 인도 등 전 세계적으로 구글어스로 인한 국가안보 및 보안 위협 문제가 꾸준히 제기

사진 노출 등 해외 인터넷 위성·지도 서비스에서의 보안시설이 노출되어 이슈가 된 바 있다.

지도기반서비스의 활성화 및 국내 기업이 같은 조건에서 동등하게 경쟁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상도 등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며, 제도 개선을 할 때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 안보를 지키면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유지되도록 균형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또, 국가안보, 테러 대응 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공조를 통한 정부의 강한 집행의지가 필요하다.

### 3. 인터넷서비스 규제형평성 확보 방안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및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국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기술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을 경쟁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야 한다. 규제조항들이 시장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클 경우 규제영향을 반복적으로 평가 및 피드백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통해 글로벌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리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이 적용될 때 혼란이 있으므로, 글로벌 시대에 적합하게 국외서비스 사업자를 포함한 신규 법제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 법에서의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사업자의 범위를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법이 실효성이 있고 제도가 타당하다면 해외 기업일지라도 국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경우 공정시장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동일하게 국내법의 적용 받아야 한다.

## 제3절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법제도적 시사점

### 1. 소셜 미디어 확산 현황과 문제점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시작된 소셜미디어의 급속한 확산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급으로 더욱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소셜미디어가 가져온 변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한 다양한 영향들이 오래가지 않을 단기적인 일시적 유행이라는 전망에서부터 데스크웹의 한계를 넘어선 또 다른 인터넷 혁신이라는

시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평가들에 앞서 중요한 점은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의 커뮤니케이션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근본적 변화인지 아니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과도기적 변화인지에 대한 평가이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에 앞서 고려해야 할 점은 소셜미디어에서 말하는 ‘소셜’(social)의 의미와 성격이다. 소셜의 개념과 속성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현재 확산 중에 있는 모든 인터넷의 미디어화 현상이 소셜미디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수용에 따른 변화의 폭과 방향을 해석하고 전망하는데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출발하여 국내외 소셜미디어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소셜미디어로 인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 가능성 높은 쟁점들을 점검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셜미디어의 유형과 보급현황, 이용행태를 기존 문헌 고찰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주목해야 할 소셜미디어 관련 쟁점들을 점검하고 있다.

## 2. 소셜 미디어의 개념 및 유형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첫째, 소셜미디어의 개념 및 유형과 커뮤니케이션 측면의 속성, 최근 국내외 소셜미디어의 확산 현황 및 이용행태의 특성 등을 문헌조사를 통해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소셜미디어의 변화 방향에 대한 단기적 전망을 기술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들을 기반으로 향후 예측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소셜미디어 관련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을 조사하여 정리, 기술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소셜미디어 확산 관련 논의들을 정리, 요약하고 소셜 거버넌스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으로 제시했다.

## 3. 소셜 미디어의 특징

소셜미디어에서 말하는 ‘소셜’은 커뮤니케이션 참여자간의 ‘관계’와 ‘경험’의 개방적 공유를 의미한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포함하는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소셜적 속성이 강하게 구현된 개인미디어를 말한다. 따라서 소셜미디어는 기존 인터넷 미디어 또는 매스미디어와 달리 연결적 재매개성을 가지며, 이 때문에 네트워크 위에 형성된 집단을 통해 메시지가 생산, 교류된다. 소셜미디어의 유형은 접근시각에 따라 다양하지만 정리하면, 관계형, 소통형, 협업형, 공유형 등의 소셜미디어로 구분

할 수 있다. 관계형 소셜미디어는 인적 연결 기능을 중심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포함되며, 소통형 소셜미디어는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와 같이 공표성에 초점을 둔다. 관계형과 소통형 소셜미디어 모두 절대적 기준에 의해 명확히 구분되기 보다는 일정 정도의 속성을 공유한다. 협업형 소셜미디어는 위키피디아, 소셜뉴스, 리뷰 커뮤니티 등 정보의 공동생산에 초점을 둔 유형이며, 공유형 소셜미디어는 유튜브와 같이 동영상 또는 이미지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경우에 해당한다.

소셜미디어 이용행태는 여러 조사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전자우편, IMS, 커뮤니티 사이트 등 기존 인터넷 서비스와는 다른 관계에 초점을 둔 이용행태를 보인다. 둘째, 최근 들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채택의 주요 동기는 정보의 신속한 획득,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형성, 유희와 오락, 시사이슈에 대한 타인의 의견 파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소셜미디어의 인적 연결 네트워크들의 규모가 모든 이용자들에게 균일하지 않으며, 소수의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불균형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넷째, PC 등 데스크톱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지만 점차 스마트폰, 노트북 등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이용비중이 늘고 있으며 이는 태블릿PC의 보급이 확대되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다섯째, 소셜미디어 이용과 다른 인터넷 미디어 이용 간의 대체성 여부는 아직 명확히 평가할 수 없다. 특히 관계형, 소통형 소셜미디어의 이용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나 이 때문에 다른 인터넷 미디어의 이용량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한편, 향후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는 앞으로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인터넷의 소셜화이다. 페이스북 커넥트, 소셜 플러그인 등과 같이 소셜미디어 외부 사이트들을 소셜미디어와 연계하는 서비스들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소셜미디어의 경쟁이다. 앞서 언급한 관계형, 소통형, 협업형, 공유형 소셜미디어들이 일률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중복되는 속성들을 가진다. 셋째, 소셜 허브의 등장이다. 소셜 허브는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이용자들이 개별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이용하는 불편이 커지자 한 사이트에서 여러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모형을 말한다. 이러한 소셜미디어들의 현재적 변인들을 토대로 할 때, 단기적으로 향후 소셜미디어는 다음 방향으로 급속한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첫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소셜화 현상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모바일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험 공유의 맥락화 현상이다. 소셜미디어의 발전단계는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ality)→

사회적 군체(social colonization)→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사회적 커머스(social commerc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는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적 커머스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경험성이 중요한 가치로 활용된다. 이용자 개인 경험이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속에서 신뢰 정보로 재맥락화됨으로써 가지는 효과는 일반 인터넷 미디어와 다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소셜미디어는 다양한 측면에서 인터넷 미디어의 핵심 서비스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소셜미디어의 단기적 변화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다.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개인 정보 즉 프로파일은 위변조, 오남용이 쉽고 상업적 이용을 위한 정보수집 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개인정보 도용 및 유출로 인한 문제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소셜미디어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개인정보 보호이다. 셋째, 타인명의 도용계정 논란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유명인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의 명의를 타인이 선점하여 원래 명의의 사회적 공신력을 네트워크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넷째, 저작권 문제이다. 소통형 소셜미디어인 블로그의 경우 현재 소셜 기능과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방향으로 미디어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 다섯째, 소셜미디어의 언론매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우려이다. 소셜미디어는 개인미디어로서 실시간성, 높은 공표성, 신뢰도 높은 인적 연결성에 기반한 네트워크 등의 요인 때문에 기성 뉴스미디어에 못지않은 의제 설정력으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여섯째, 소셜 커머스 등 소셜미디어의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일곱째, 선거 캠페인에서 소셜미디어의 이용에 따른 문제이다. 최근 2010년 지방선거에서 트위터를 이용한 유권자들의 선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규제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처럼 앞으로는 선거 캠페인에 소셜미디어가 이용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이 때문에 규제법률의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소셜미디어 관련 사회적 쟁점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는데 필요한 원칙으로 소셜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소셜 거버넌스는 이용자 공동의 자율 관리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외부의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인 단위의 이용자가 스스로 소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셜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진

다.

첫째, 이용자의 자율적 관리이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외부간섭 없이 스스로 소셜미디어 공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외부로부터 최대한 독립적이어야 한다. 인터넷 미디어는 매스미디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에 어려움이 많다. 이는 인터넷서비스기업의 비즈니스 정책의 영향력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터넷서비스기업의 자의적, 임의적인 개입을 최소화 또는 견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 권한을 보호할 수 있다. 셋째, 소셜미디어 공간의 개인정보의 주체적 관리자는 이용자 개인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스템도 이러한 원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의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자율적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소셜미디어의 공적 이용 캠페인을 통해 긍정적 기능을 구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투표 캠페인, 헌혈 캠페인, 봉사 캠페인 등의 소셜 캠페인에서부터 기부 등 다양한 분야의 소셜 채널을 활용한 공익 역할 확대가 요구된다.

#### 4. 시사점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확산 및 이용행태, 쟁점, 수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유용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급속하게 확산 중인 소셜미디어의 현재 모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소셜미디어 이용자 행태를 여러 조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이용행태를 거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향후 예측되는 소셜미디어 관련 사회적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 방향의 사회적 수용 원칙을 마련하는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제4절 모바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망중립성과 과제

#### 1. 망 중립성 원칙의 정의 및 필요성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들이 성장하고 발전 하는 데에는 망 중립성의 원칙이 크게 기여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네이버’, 해외의 Facebook’, Google’, ‘Youtube’, ‘Skype’ 등 유명한 인터넷 기반서비스의 발전의 밑바탕에는 인터넷 망상에서의 콘텐츠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 이러한 ‘망중립성’ 원칙, 다시 말해 동일요금으로 텍스트든 동

영상이든 콘텐츠의 종류와 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제공되는 망중립적 환경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부지불식간에 크게 기여를 해 왔다. 미국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Lawrence Lessig 교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1년여 만에 TV네트워크에 견줄 만한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망의 중립성 덕분 이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Lessig, 2006.)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바일 인터넷 분야에서는 경쟁국들에 비해 활성화가 뒤처지고 있다. 다시 말해, 훌륭한 모바일기기 제작기술, 무선망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의 폐쇄적인 망 운용방식으로 인해 일본 등의 경쟁국들에 비해 모바일 인터넷 시장의 활성화가 지연되어 온 것이다. 2005년까지 우리나라는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어느나라보다 발전된 무선 인터넷 환경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되어 졌다.

▶ ‘2005년 모바일 관련 신문기사

- “IT839전략의 핵심가운데 하나인 지상파DMB가 세계최초 상용화에 성공(디지털데일리, 2005.12.14)
-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APEC 부산서 세계 첫 개통”(국민일보, 2005.11.15)
- “팬택,MS,인텔 3사의 공동작품인 큐리텔 스마트폰은 유비쿼터스와 컨버전스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아이뉴스24, 2005.7.18)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의 무선 인터넷 망에대한 폐쇄적인 정책은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 (일본은 1억1천만명의 무선전화 이용자 중 모바일인터넷 이용자가 9,000만명) 현저하게 떨어지는비율인 4천700만 무선전화 이용자 중 500만명에 불과한 결과를 도출해 내고 말았다. 이에 대한 외인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 미국 구글 부사장 빈트 서프 박사<sup>5)</sup>는 ‘09년 10월27일 KT와의 영상대담에서 “한국의 모바일 시장 규모가 왜 일본보다 작은지 궁금하다. 한국에서는 모바일이 일본만큼 인기 있고 무선 데이터 통신의 활용도도 세계 최고일 걸로 여겼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를 뽐내는 나라 아닌가?” 라고 반문(중앙일보, 2009.10.27.)

다행히, 현재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이러한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중이나 앞으로 지속적인 동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규제와

5) 빈트서프(66)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69년 미 국방부에서 인터넷의 효시인 ‘아르파넷’을 개발하였고 현재 구글의 부사장을 역임

확산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 브라우저나 검색엔진의 선택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 최근 출시 외산 스마트폰은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변경이 불가한 기본 탑재 SW나 웹 브라우저, 검색엔진이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전자신문, 2010.4.5)

그러므로 향후에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위주의 새로운 개념의 모바일인터넷 ‘망중립성’의 원칙 도입이 필요 할 것이다.

## 2. 해외 망 중립성의 논의 현황

현재 미국,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망중립성 원칙의 시장 도입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각 이해당사자들 별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은 망중립성의 원칙을 새롭게 정비하고 이 원칙들을 모바일 인터넷 망으로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2009년 10월17일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FCC) 제나코스키 의장은 ‘CTIA IT & 엔터테인먼트’행사에서 무선망에서도 망 개방과 중립성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오픈 디바이스, 오픈 애플리케이션’(Open Device, Open Application)을 조건으로 700MHz 주파수를 경매할 계획이라고 밝힘(디지털타임즈, 2010. 2. 8.)

우리나라도 규제기관의 원칙 수립을 위해 이러한 사례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 통신위원회인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의 망중립성의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자.

### ▶ 미국 망중립성 위반 관련 사례

- ‘05년 초 미국의 한 지역 ISP인 Madison River Communications가 한 인터넷 전화 사업자인 Vonage가 서비스를 차단하여 이를 제소(아이뉴스24, 2006.10.24)
  - FCC는 이러한 ISP의 서비스 차단을 막기 위해 ‘05년 8월 ISP의 규제를 위한 인터넷 망중립성의 4대원칙 제정
- ‘07년 ISP의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차단에 대해 FCC는 망중립성 원칙으로서 제재를 가 함으로서 유선망에서의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 접화
  - 미국 ISP인 Comcast가 ‘07년 이용자들에게 아무런 공지없이 Bittorrent라는 P2P애플리케이션이 과다 트래픽을 발생 시킨다는 이유로 동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여 이에 대해 FCC가 경쟁제한행위로 보고 ‘08년 1월 시정명령(김상국, 2009)
  - 하지만 ‘08년 9월 Comcast가 항소하고 ‘10년 4월 ISP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므로 FCC가 제재할 권한이 없는 부당한 월권행위라고 판결하여 이에 대한 논란 확산(NYT, 2010.4.6.)
  - 현재 FCC는 ISP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며 우리나라는 이미 ISP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

이러한 배경에 의해 미국은 다음과 같은 망중립성의 6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 3. 해외 현황과 시사점

#### < 미국 FCC 망중립성 6대 원칙과 목적 >

1. [콘텐츠에 대한 중립성]합리적인 망관리를 조건으로, ISP는 인터넷상에서 합법적인 사용자선택에 의한 콘텐츠를 보내거나 받는 어떠한 이용자도 막을 수 없다.

- 이 원칙은 이용자가 전송하는 콘텐츠의 통제권 보장을 의미
  - 즉, 인터넷 이용자는 아이디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ISP에게 구매받지 않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들이 선택한 콘텐츠를 받는 것을 보장
  - 단지 콘텐츠에 접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과 같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

2.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대한 중립성]합리적인 망관리를 조건으로, ISP는 합법적인 이용자의 선택에 의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떠한 이용자도 막을 수 없다.

- 동 원칙은 이용자가 선택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이용권을 보호가 목적
  - FCC는 모든 원칙들은 법적인 허용성, 공공안전, 국토안보를 위해 ISP에게 충분한 융통성을 주고자 함
  - 따라서 인터넷 상의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들까지 보호할 의도는 없음

3. [기기에 대한 중립성]합리적인 망관리를 조건으로, ISP는 망에 해를 주지 않는 한 합법적인 (이용자의 선택에 의한) 기기를 이용하여 망에 접속하거나 사용하는 어떠한 이용자도 막을 수 없다.

- 이 원칙은 이용자가 적법한 기기에 접속하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함
  - 이 원칙은 단순히 유선망에만 국한되지 않고 무선망에 적용을 염두하고 있음

4. [경쟁보장의 원칙]합리적인 망관리를 전제로, ISP는 네트워크제공자들, 애플리케이션 제공자들, 서비스 제공자들 그리고 콘텐츠 제공자들 간의 경쟁에 대한 어떠한 이용자의 권리도 박탈할 수 없다.

- o 기존의 원칙에 대해 자구 수정만이 있을 뿐 서비스 제공자들간의 경쟁보호에 대한 의도에는 변화 없음

5. [차별금지의 원칙]합리적인 망관리를 전제로, ISP는 반드시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해 차별적인 태도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

- o ISP가 다른 종류의 트래픽 혹은 다른 제공자나 사용자에게 가격과 서비스품질에 대해 차별을 하는 것은 중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 하지만, 인터넷 트래픽이 빠르게 증가하고 ISP도 이용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망을 관리하거나 신기술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차별과 그렇지 않은 차별을 구분하는 것
- o “차별적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은 ISP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가격이 향상된 서비스나 우선적 접속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제공가격을 다르게 책정하여서는 안된다는 뜻
  - 하지만, 이는 ISP가 가입자들에게 다른 서비스에 대해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와는 다름
  - 즉, 유선 광통신망과 무선 3G나 4G망이 다르듯이 합리적이라는 망관리는 융통성이 있다는 말로서 ISP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09년 3월 mVoIP사업자인 Skype는 iPhone용 애플리케이션을 앱스토어에 출시하여 4월까지 약 400만개를 판매 하였으나 이통사인 AT&T가 동 서비스를 3G망에서는 사용 할 수 없고 Wifi지역 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하여 미국 시민단체인 Free Press가 FCC에 이용제한 철폐를 공식 요청(김상국, 2009)

6. [망 관리 투명성의 원칙]합리적인 망관리를 전제로, ISP는 반드시 이용자,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제공자들의 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망관리 및 다른 기타 조치들과 관련된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o 투명성은 비효율성과 사회적으로 유익하지 못한 시장의 행태를 줄일 수 있음
  - 또한, 정확한 정보는 경쟁, 혁신, 가격인하 및 품질 제고를 통해 시장을 효율적으로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출처 : FCC, '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 FCC 09-93, 2009. 10. 22.)

#### 4. 모바일인터넷 망 중립성의 5대과제와 기대효과

이들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 원칙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1)이용자의 선택권의 보장, 2)기술적 중립성 보장, 3)공정경쟁의 보장, 4)망제공자의 책임제한, 5)망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보장 등의 원칙이 필요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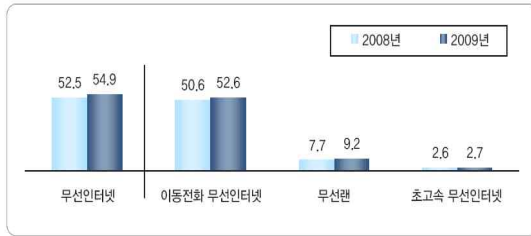
### 제5절 스마트폰 활성화를 위한 3대 핵심이슈 및 정책방향

#### 1.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

우리나라 유선인터넷 이용률은 77.1%로서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이용률과 초고속 인터넷보급률로 명실상부한 유선 인터넷 강대국이라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 무선인터넷(이동전화·무선랜·초고속무선인터넷) 이용률이 '09년 54.9%로 전년대비 2.4% 증가하는 등 점차 유선인터넷을 넘어 무선인터넷으로 이용이 확산 및 진화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출시를 시작으로 무선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스마트폰은 무선인터넷 이용률 확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무선인터넷이용실태 조사에서(한국인터넷진흥원) 우리나라 무선인터넷 이용률 중 이동전화를 이용한 무선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으며, 스마트폰 이용자의 이용률이 80.7%로 일반이동전화 이용자에 비해 32.0%p 높게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로 5년 안에 모바일인터넷 이용자가 유선인터넷 이용자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10년 9억4100만 명에서 '13년 15억 2800만명, 모건스탠리, The Mobile Internet Report, 2009.12) 우리나라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하여 다양한 콘텐츠의 부재, 비싼 이용요금 등의 이유로 국내 무선인터넷의 발전 속도와 활성화가 지연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된바 있다.

<무선인터넷 이용률 추이>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이용률>



한국인터넷진흥원,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09

‘내 손 안의 작은 PC’라 불리는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정부·기업·일반국민 모두에게 스마트폰은 핫이슈로 부각되었으며, 편리한 휴대성과 실시간성을 겸비한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생활 및 업무, 정부정책 전반에 급속히 파급되어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 증대를 반영하듯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 발표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 마련에 앞장섰다. 하지만, 최근 각 부처별로 모바일 산업 정책을 앞 다투어 발표하고 있어 IT관련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조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선인터넷서비스의 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에서의 정보보안 문제, 공공정보 이용의 한계 등 다양한 이슈의 진단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IT 강국으로의 재도약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

## 2. 스마트폰 관련 3대 핵심이슈 진단

### 가. 스마트폰 시대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중요성 부각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핵심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 세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 규모는 지난해 40억 달러에서 2012년 175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sup>6)</sup>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주로 음악, 게임 등에 치중<sup>7)</sup>되어 있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부족으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의 경우 저렴한 데이터이용요금 및 다양한 콘텐츠로 데이

6) Getjar, Sizing up the global mobile apps market, 2010 / 앱스토어 원Data : Chetan Sharma Consulting

7) 국내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들은 주로 폰 꾸미기(80.5%), MMS(76.0%), 음악(38.0%), 정보검색(30.9%), 게임(24.9%) 등을 이용(한국인터넷진흥원,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09)

터 매출을 증가시켜 모바일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점이 미흡하다. 또, 애플리케이션 시장 활성화로 과거 IT벤처 활성화 붐이 개인에게도 전이되어 1인 기업 활성화로 재연 될 것으로 예상되나 창의적 개발 여건 부족한 실정이며, 국내 콘텐츠 시장 활성화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기 위해 공공 정보의 개방과 기업의 앱스토어 개발 등 다양한 정부정책과 기업의 신규전략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 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 이슈

‘09년 전 세계 모바일 SNS 이용자는 2억 명을 넘어섰고 ‘12년에는 약 9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eMarketer)되고 있다. 전 세계 2,500만명 이상이 모바일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고 있으며, 트위터의 경우 ‘10년 1월 기준 470만명의 모바일 사용자가 증가(comScore MobiLens ,2010.3)하였다. 이렇듯 언제, 스마트폰의 이동 편의성 및 실시간 전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이용 확산에 기여하였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지리정보서비스, 위치기반서비스 등 다른 모바일 서비스와 연계성이 높아 ‘SNS 게임’, ‘위치기반 SNS’, ‘SNS 채팅’ 등의 다양한 신규 융합 서비스 출시를 촉진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위치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위치기반 SNS의 경우 본인이 원치 않는 정보 및 사생활 노출과 악용 가능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다. 스마트폰의 정보보안 이슈

기존 인터넷망에 무선 AP를 설치한 즉, 무선랜을 통한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 보급된 무선AP중 74%는 보안 미설정으로 보안상태가 매우 허술하다고 조사되는 등 스마트폰을 통해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및 콘텐츠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보안위협 노출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보안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 누구나 무선AP에 쉽게 접속할 수 있어 해킹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무선AP를 통해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악성코드나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의 정보보안 이슈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 스마트폰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가.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기술 및 서비스 개발

국내외 이용자들의 차별화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시장우위를 선점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킬러 애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을 개발 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언어의 한계, 제도 등의 문제를 해결 할 필요가 있다.

#### 나. 스마트폰 이용자보호 및 산업진흥을 위한 선진적 제도 마련

스마트폰의 특성상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 콘텐츠에 노출되기 때문에 불법 유해 콘텐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 제한, 국가 또는 개인 등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민감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의 보안관리 체계 구축, 악성코드 문제 해결, 정보보안, 모바일 중독 등의 ‘클린’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 다. 정부 주도의 스마트폰 이용촉진 환경 조성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재난재해 알림 등의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여 국민들과의 원활한 소통 시도 하는 등 정부의 정책 홍보 등에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하여 열린 정부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단순 정보 제공 및 공유가 아닌 발전된 형태의 신뢰성 있는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라. 건전하고 합리적인 스마트폰 산업 생태계 조성

중소콘텐츠기업의 경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으나 수익성 담보 및 애플리케이션 등록 절차 등의 프로세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운영과 공정경쟁이 이뤄지는 환경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창의적 모델을 포털이나 이통사가 함께 개발 및 지원하는 상생노력이 필요하며, 이들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통한 건전한 시장조성이 필요하다.

## 제6절 해외 주요 인터넷기업의 M&A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1. 인터넷 시장 현황

인터넷이 우리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인터넷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의해 무선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하였고, 이에 따라 인터넷의 영향력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등 인프라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있으며 2010년 현재 만 3세 이상 인구의 77.8%인 37,010천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가구 인터넷 보급률은 무려 94.3%이르며 OECD회원국들 중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러한 인터넷 이용 현황은 10년 전인 2000년에 인터넷 이용율이 44.7%(19,040천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33.1%가 증가하였으며 이용자수에서도 1.94배가 증가하는 등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에 기반을 둔 인터넷 비즈니스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었고, 최근 주식시장을 인터넷 관련 업종이 주도하며 2009년 9월 기준으로 구글의 시가총액이 약 1,490억 달러로 HP(1,102억 달러)와 인텔(1,106억 달러)을 능가하였고 국내에서도 NHN의 시가총액이 8조 132억원으로 SBS 시가총액 8,232억원의 9.7배에 달하는 등 인터넷 서비스 기업의 가치가 전통기업에 버금가고 있다. 특히 이용자 참여 기반의 웹2.0 시대를 넘어 개인화 및 소셜네트워크 기반의 웹3.0시대로 진입하면서 플랫폼화 되어가는 인터넷서비스의 가치와 파괴력도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산업과 비교하여 인터넷 플랫폼의 서비스적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비교하여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 산업은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와 더불어 구글, 야후, 페이스북 등 기술력과 자본을 축적한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혼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잘 정비된 인프라와 '지식iN', '싸이월드' 등 글로벌 인터넷 비즈니스 트렌드를 선도했던 국내 인터넷서비스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잠재가치가 뛰어난 인터넷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성장동력화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등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글

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현황을 조망해보고 이들 기업들이 인터넷 비즈니스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업 인수합병 동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인터넷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2. 주요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 현황

이 연구의 범위는 글로벌 인터넷 비즈니스를 선도하고 있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등 해외의 주요 인터넷기업들의 탄생에서부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까지의 과정 및 비즈니스 환경을 고찰해보았다. 특히,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해온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기업들을 인수합병했는지 그 동향을 살펴보고 인수합병 트렌드를 분석해봄으로써 인터넷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를 도출해보았다. 그리고 글로벌 인터넷 비즈니스 트렌드를 기반으로 국내 인터넷산업의 발전 방향 및 국내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 등을 연구하였다.

## 3.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해외 주요 인터넷기업들의 기업 인수합병 동향을 분석하였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등 가장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낸 주요기업들이 인수합병에 있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의 인수합병을 이루어냈는지를 살펴보았다. 시사점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국내 인터넷산업의 발전 방향 및 국내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과 제도적 보완사항을 도출하였다.

## 4. 기대효과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으며 스마트폰 보급과 더불어 촉발된 무선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발전은 이러한 인터넷의 영향력을 더욱 더 커지게 하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인터넷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서 국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다시 한 번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인터넷 비즈니스 트렌드를 분

석하는 것은 국내 인터넷산업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제7절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및 시사점

### 1. 사물지능통신의 현황

유비쿼터스 내지는 유비쿼터스 사회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지식과 정보의 접근과 활용이 가능한 첨단 네트워크기반의 정보사회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보 주체와 정보객체의 공간적·시간적 제약이 없어지면서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물지능망(The Internet of Things)이다. 종래에는 그동안 정보의 수집·활용이 사람 중심의 통신을 기반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서비스되어 왔었던 반면, 이제는 방송·통신·인터넷 등 개별 미디어간 융합을 기반으로 사람뿐 만 아니라 사람 對 사물, 사물 對 사물까지 통신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능동적, 지능형 융합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은 전문가의 네트워크, 네티즌의 네트워크에서 만물의 네트워크로 진화하게 되며 상호적이고 지능적이며 생활에 스며드는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유비쿼터스 기술을 통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어떤 것과도 (anytime, anywhere, with anything) 소통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최근 스마트 폰 등 지능화된 디지털 기기의 보급 확산에 따라 사물정보(위치정보, 교통, 기상 등)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보편적인 네트워크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스마트폰 등의 지능화된 기기를 활용한 사물지능통신은 내가, 여기서, 모든 것(스마트폰, 넷북 등)을 통해 상황 인식, 위치정보 파악, 원격제어/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융합 서비스 확산의 기반이 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는 글로벌 금융 위기, 사회적 양극화, 일자리 창출, 기후 변화, 에너지 절감, 안전한 사회 구축 등 당면한 사회·경제적 과제 및 국가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차세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인프라에 주목하고 있다.

## 2. 사물지능통신의 정의

### 가. 협의의 사물지능통신

사물지능통신(O2N : Object to Object Intelligent Network)은 방송통신망을 이용하여 ① 사람이나 지능화된 기기에게 사물정보를 제공하거나, ②사람이나 지능화된 기기가 사물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통신을 의미한다.

### 나. 광의의 사물지능통신

사물지능통신(Object to Object Intelligent Network, O2N) 광의적으로는 통신과 ICT 기술을 결합하여 원격지의 사물의 상태나 상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솔루션을 의미한다. 가령, 지하철의 철로 및 기둥 터널 등의 시설물에 부착된 센서들은 각자 통신을 하면서 정보를 모아 보내주게 되면 그 정보를 통하여 사람들은 쉽고, 안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반시설을 모두 일컫는다.

### 다. 사물 통신 서비스

사물 통신 서비스는 주변의 사물이나 기기에 정보를 수집하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한 후 이를 통하여 수집되거나 상호 공유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혹은 사물 자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개념이다. 좁은 개념으로 보면 사물간의 통신 및 사람이 작동하는 장치와 기계간의 통신으로 볼 수 있지만, 넓은 개념으로는 사물 간의 통신 및 원격지 사물의 상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솔루션을 의미한다.

## 3. 해외 사물지능통신 시장현황

전 세계 사물지능통신(M2M) 시장은 2007년 기준, 15조 8000억 원에서 2013년 50조 7000억 원 규모로 성장하고 네트워크 연결되는 사물은 약 25000만개에서 1억 2600만개로 지금보다 약 5배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전망을 보여 주듯, 세계 주요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사물지능통신(M2M)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가. 미국

현재 미국은 정보기술 분야를 미국의 경제적 번영, 안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하여 모든 국가정책에 ICT 접목을 통해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온라인으로 하나 되며 미국시민의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국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2025년까지 미국의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6대 瓦解性 技術 (Disruptvie Technology) 중 하나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인터넷(The Internet of Things)을 선정하였다.

미국의“Internet of Things”관련 동향은 크게 공공 부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미국 연방표준과학 연구소인 NIST(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의 개발 및 확산 노력과, 이동통신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로 보고 있는 M2M 관련 움직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나. 유럽

EU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식정보화사회를 위한 전략으로 i2010을 추진해왔다. 지식정보화 사회전략의 일환을 추진되고 있는 i2010은 IT기술 도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방안으로, 단일 정보사회 공간 구축, R&D 혁신과 투자 강화, 성숙한 정보사회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EU는 정보사회 및 미디어 시장의 개방성과 경쟁력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과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혁신과 투자 강화를 위한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에서 532억 유로를 투자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FP7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CAS AGRAS(Coordination And Support Action for Global RFID-related Activities and Standardisation) 프로젝트에서는 이미 i2010의 후속으로 “Internet of Things”에 대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EU는 2009년 6월에 사물인터넷 액션플랜(Internet of Things - An action plan for Europe)을 발표하였다.

#### 다. 일본

일본 정부 역시, 국민생활과 산업경쟁력 향상 및 사회적 과제의 해결수단으로 IT에 주목함으로써 ‘IT 신 개혁전략’을 통해 사회적 과제 해결의 가속화 방안을 수립

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07년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제도가 도입되고부터 사물지능통신(M2M) 시장의 활성화가 시작되어 최근에는 MVNO들이 사물지능통신(M2M)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물지능통신(M2M) 시장은 그 활용분야가 다양하지만 개별 사물지능통신(M2M) 시장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MVNE 전략을 내세우면서 MVNO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 4. 국내 사물지능통신 기반구축 및 추진사업의 현황

사물지능통신은 기존 사람 중심의 통신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영역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사물 對 사물, 사람 對 사물, 사물 對 사람의 영역에서 사물지능통신은 기능적으로 독립적이거나 또는 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4G 등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융합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통신비용의 감소, 모든 사물의 임베디드 모바일화 등 ICT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사물들이 급속히 네트워크화 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사물지능통신을 위해서는 통신과 ICT기술을 결합하여 원격지의 사물, 사람의 상태 정보, 위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제반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물지능통신의 기반구축과 관련된 사업이 민간부문과 정부주도로 각각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가. 사물지능통신 서비스의 구축관련 제문제

사물지능통신은 기존의 u-City, u-Health, u-교통, u-환경 사업 등을 통해 사회 현안 해결, 재난·재해방지, 에너지 절감, CO2 감축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전자, 섬유, 금융, 건설, 의료, 유통 등 모든 산업에서 사물지능통신 서비스가 활용됨으로써 국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사물정보를 기업경영, 공공서비스 등 사회 각 분야에 활용하여 전 산업의 고도화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재난·재해 예보, 환경·방범·시설물 모니터링 등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국가 안전 및 사회 통합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다.

##### 나. 국내 사물지능통신서비스의 구축현황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에서 약 10여 년 전부터 먼저 사물지능통신관련 사업을 시작

하였다. 통신 3개사(SKT, KT, LGT)를 중심으로 건물관리, 차량/교통관제, 안전/보안관리, 원격검침, 환경 모니터링, 특정범죄자 보호관찰 등 산업전반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는 2004년부터 IT839 중 3대 인프라의 하나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을 선정하고 신규 서비스 발굴 및 검증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 다. 민간부분의 사물지능통신 사업 현황

민간에서 추진 중인 사물지능통신관련 분야들을 살펴보면, 그린 IT분야는 ‘전력사용량 모니터링 서비스’, ‘유무선 통합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통합관제서비스’ 등의 원격 검침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전력 IT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융합 IT분야는 시설안전, 농축수산물관리, 환경모니터링, 의료관리, u-safety분야 등에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 라. 공공부분의 사물지능통신 사업 현황

민간업체와 더불어 정부에서도 미래 네트워크인 사물통신 기반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식별체계, 표준화, 응용서비스 발굴, 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재난/안전, 건설/SOC, 농·축산, 보건/복지, 물류 등의 분야에서 총 27건의 USN 시범사업 추진하여, 기상·환경·안전 등 서비스 모델 발굴을 위해 지역별 서비스 인프라 및 개별 무선망을 구축하였다. 또한, USN 현장 시험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수행 하였다. 그리고 2009년 현재 총41개 지자체(56개 지구)에서는 사물통신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u-City 사업 또한 추진 중이다.

#### 마. 정부의 사물지능통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강국인 동시에 가장 빠르게 정보사회로 진입한 국가이므로, 사물지능통신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여건은 사물지능통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를 변모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전국 총 29건, 445억 8천만 원 규모의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 시범사업(2005년 ~ 2008년)을 추진했고, 현재 약 41개 지자체 56개 지구에서 u-City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존 인간 중심의 네트워크 정책에서 사람 對 事物, 事物 對 事物 간 통신까지 확장된 미래 네트워크를 선도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2012년까지 “세계 최고의 사물통신 기반구축을 통한 미래 방송통신 융합 초일류 ICT 강국 실현”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본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2012년까지 세계 최고의 사물통신 기반구축,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사물통신 융복합 서비스 발굴,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국제표준 선도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 사물통신 기반구축, (2) 사물통신 서비스 활성화, (3) 사물통신 기술개발, (4) 사물통신 확산 환경 조성을 4대 분야로 정하고 12대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공공/민간 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요·공급자 간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 새로운 융합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사물지능통신 활성화 지원법 마련을 위한 TFT(가칭)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방통위도 10대 미래서비스에 사물지능통신을 선정하여 원천기술 확보 및 표준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물 통신 기반을 구축하고 서비스모델 발굴 및 민간 부문의 사물 통신 응용 서비스 확산지원을 통한 사물 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물 통신 표준 모델을 확립하고 핵심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물 통신 확산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의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호 체계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서비스 도입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5. 법제도적 쟁점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국내외에서의 기술적 진보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간의 통신을 뛰어넘어 사물과 사물간의 통신이 가능한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종래의 법제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새로이 등장한 ‘사물지능통신’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둘러싼 제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법률적 통찰을 위하여 법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이를 전달할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사물지능통신 서비스를 육성하고 이용자의 권익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목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물지능통신기반의 이용에 있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전달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뒷받침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존의 제 법규를 ‘사물지능통신 서비스의 활성화’에 적합하도록 개정 활용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사물지능통신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사물지능통신 기술적 변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위해 새로운 법의 제정을 통해 이를 규율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법개념을 넘어서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부각과 새로운 논의를 통해 사물지능통신을 새롭게 정의 등을 통해 사물지능통신의 기반구축과 진흥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법제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 제8절 온라인콘텐츠산업의 현황과 법적 이슈

### 1. 온라인콘텐츠 관련 법제도 현황

최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로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콘텐츠산업진흥법”으로 개정되었고, “이러닝산업발전법”개정(안)으로서 “이러닝 산업발전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었다.

또한 스마트 폰의 등장과 같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관련 서비스의 이용 형태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어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콘텐츠산업의 현황과 그 법적 이슈’라는 주제 하에 최근 개정 법률의 현황 및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관련 법적 이슈들을 정리하고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2. 개별 법률적 쟁점

본 연구는 우선 최근 개정된 “콘텐츠산업진흥법”과 “이러닝 산업발전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개정배경 내지 동기와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이용자권익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 “콘텐츠산업진흥법”상의 거래인증제도와 품질인증제도 및 “이러닝 산업발전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상의 표준약관 제도 도입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온라인콘텐츠산업과 관련하여 법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별 쟁점으로 콘텐츠 품질보증(SLA), 앱 스토어, 사자의 디지털 유산, 게임 내 자동사냥 프로그램, 아이템거래 금지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 3. 대안 제시

급격한 법 환경 및 서비스제공 환경의 변화 속에서 문제되었던 개별 이슈들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최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 관련 현안들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관련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 4.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한 의의

본 연구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법률 개정 및 서비스 이용 형태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법률적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다룬 초기 연구이며, 최근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에 대한 법제들의 이해와 향후 개선방안 도출에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향후 개별적인 법적 이슈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 및 이용자 이용자보호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제3장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연구

### 네트워크 운영 및 협력

#### 제1절 인터넷 법·제도 포럼 운영

##### 1. 운영목표 및 주요 논의내용

- 인터넷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적·이론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인터넷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도출 및 입법정책 반영
- 입법안 세부과제 연구 및 검토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 기본법 입법추진 지원
  - 산업기반강화 : 인프라, 서비스, 공정경쟁, 정책지원방안 등
  - 이용자보호 : 소비자보호, 분쟁해결 등
  - 정보보호 및 콘텐츠 :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내용규제, 자율규제 등
-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이슈 논의

##### 2. 포럼의 구성 및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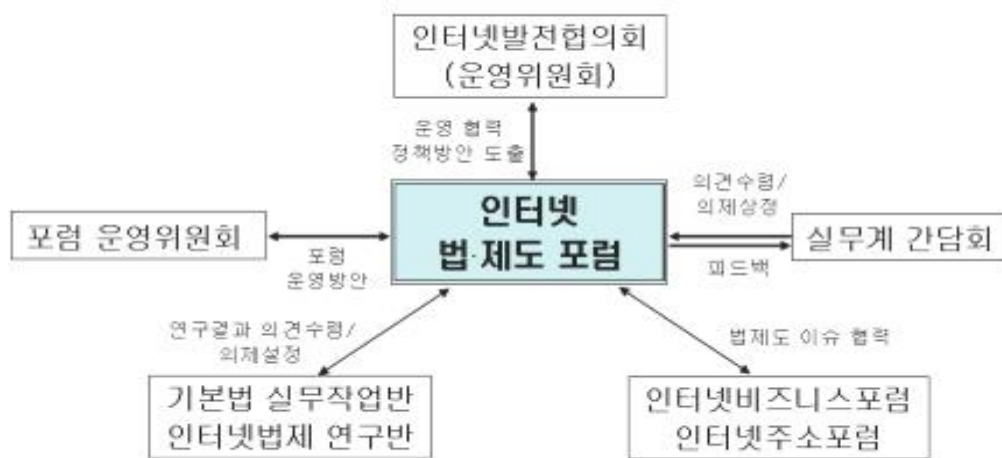
- 포럼의 구성
  - 학계, 업계, 언론계 등 인터넷 법제도 관련자로 구성(자유참여)
- 포럼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학계 및 업계 대표로 구성
  - 세미나 의제설정, 위원관리 등 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회의 개최
  - 월 1회 개최
    - ※ 반기별로 워크숍 또는 세미나 개최
  - 회의 의제
    -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 기본법안 관련 이슈(상반기)

- 인터넷 관련 개별법령 정비방안(하반기)
- 인터넷발전협의회 주소/비즈니스 포럼과의 협력과제(수시)
- 기타 업계 등의 의견수렴에 따른 법제도 개선과제(수시)

○ 실무계 간담회 개최 및 의견수렴 강화

- 효율적인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업체 실무자 중심의 분기별 간담회 개최
- 간담회와 별도로, 업계수렴 및 정책반영 강화방안 강구(의견수렴 결과의 포럼 논의를 통하여 구체적 연구 및 정책반영 가능성 검토)

<인터넷 법·제도 포럼 운영체계>



3. 「인터넷 법·제도 포럼」 운영실적

○ 월레포럼 총 7회 개최

○ 운영위원회 총 6회 개최

- 월레포럼 주제 선정 및 포럼 활성화 방안 논의 등

○ 실무계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 실무계간담회 개최('10.3.9) : 업계가 실감하는 글로벌 경쟁력의 의미 및 확보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
- 워크숍 개최('10.10.20~21)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도출 및 정책 제안

<월례포럼 개최 실적>

| 구분 | 개최일        | 주제                                     | 발제자                                 |
|----|------------|----------------------------------------|-------------------------------------|
| 1회 | '10. 2. 24 | 인터넷기반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 주윤경 주임(한국정보화진흥원)<br>• 정민하 실장(NHN) |
| 2회 | '10. 3. 24 | 무선인터넷 망개방 현황 및 주요이슈                    | • 한은희 팀장(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
| 3회 | '10. 4. 28 | 국외서비스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             | • 이규정 위원(한국정보화진흥원)                  |
| 4회 | '10. 5. 26 | 인터넷 광고의 특징과 규율방안                       | • 최경진 교수(경원대)                       |
| 5회 | '10. 6. 30 | 우리나라 자율규제 활성화 및 제도화 방안                 | • 이동훈 교수(배제대)                       |
| 6회 | '10. 7. 28 | 수익독점적 시장인 인터넷산업내의 생태계 복원 방안            | • 이정민 회장(인터넷콘텐츠협회)                  |
| 7회 | '10. 9. 29 | 인터넷기반 결제서비스 현황 및 발전 방향                 | • 조용태 차장(인터넷기업협회)                   |

## 제2절 NIA-인터넷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1. 개요

- 주제 : “신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법적 쟁점과 과제”
- 일시 : 2010년 11월 13일(토), 13:30~18:00
- 장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206호
- 주최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법학회
- 주관 : 성균관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 2. 세부 내용

o Session 1. 좌장 : 정준현(미래입법정책포럼 공동대표, 단국대 교수)

– 제1주제 : 클라우드 컴퓨팅

– 발표 : 이창범(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분석팀장)

– 토론 : 오병철(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경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제2주제 : 사물지능통신

– 발표 : 차재필(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

– 토론 : 박영철(용인송담대학교 교수)

임종인(고려대학교 정보통신정책대학원 원장)

o Session 2. 좌장 : 김민호(인터넷법학회 연구이사, 성균관대 교수)

– 제3주제 : 신규 인터넷 미디어(스마트TV)

– 발표 : 지성우(단국대학교 교수)

– 토론 : 박민수(중앙대학교 교수)

조영선(SK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인터넷비즈니스 관련 법제도 연구

---

2010년 12월 인쇄

2010년 12월 발행

발행인 : 김 성 태

발행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 중구 무교동 77번지

(02)2131-0114

인쇄처 : 호정씨앤피

(02)2277-4718

---

<비매품>

1. 본 연구보고서(도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출연금으로 수행한 방송통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연구보고서(도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